

외국법제동향분석 93-1

유럽공동체의 방송규제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분석」은 외국법제의 해설과 입법동향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입법관계자의 입법활동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일반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번호 (02)722-0163/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문준조

수석연구원 정상조

선임연구원 최철영

創刊辭

21세기의 도래를 바로 눈앞에 둔 오늘날, 우리는 외국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 살게되는 이른바 國際化時代(Globalization)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전체적으로 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우리에게 직접·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國際環境의 급속한 變化를 예의 주시하고 논리적으로 분석·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外國法制에 관한 연구는 이와같이 共產主義 사회의 붕괴와 經濟블록화로 특징지워지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요히 필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韓國法制研究院은 이러한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外國法制動向分析」이라고 하는 간행물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外國法制動向分析은 최근의 유럽공동체 規則과 指針 그리고 유럽공동체 법원의 判例를 신속·간결하게 소개함으로써 경제블록화의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3억 5천만 인구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시장에의 기업진출에 긴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外國法制動向分析은 러시아·동구·중국의 최근 입법동향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이 舊社會主義圈市場(Non-market economy)에 진출하고 그들과 교류하는데 도움이 될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外國法制動向分析은 이와 같은 유럽공동체·러시아·동구·중국의 최근 입법동향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법제를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분석을 한 논문을 게

재함으로써 관심있는 분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본 연구원의 「外國法制動向分析」創刊을 계기로 향후 關係部處 · 學界 · 實務界 등에서 유럽공동체 · 러시아 · 동구 · 중국 등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이른바 市場 多邊化에 관한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와 정책수립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간행물의 참신한 기획, 자료수집, 쟁점분석 등의 어려운 작업을 위하여 애써준 韓國法制研究院 研究陣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993年 4月 15日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李世薰

목 차

제1부 주요 외국법제 해설

제1편 유럽공동체의 放送規制

I.	유럽공동체와 국경없는 放送	9
II.	유럽공동체 放送指針의 내용	11
1.	방송프로그램의 製作과 內容등에 관한 규정	11
2.	“유럽放送物”을 위한 放送時間 할당	14
III.	무역장벽으로서의 放送規制	16
1.	방송프로그램에 관련된 GATT규정들의 검토	16
2.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GATT위반여부	17
IV.	貿易障壁으로서의 著作權	19
1.	著作權에 의한 市場分割	19
2.	유럽공동체 法院의 判例	20
3.	유럽공동체 委員會의 指針(案)	22
V.	결론	24

제2편 형가리에서의 商標保護

I.	헝가리 商標法의 背景	26
II.	商標의 登錄	27

III. 商標保護의 更新과 期間의 滿了	29
IV. 商標權 非侵害의 決定	30
V. 商標登録原簿의 管理	30

제2부 외국입법동향

제1편 외국입법동향색인

I. 分류기준표	35
II. 외국입법동향목록	36

제2편 외국입법동향

I. 유럽공동체입법동향	46
II. 러시아·동구입법동향	74
III. 중국입법동향	80

제 1 부

주요 외국법제 해설

제1편 유럽공동체의 放送規制

丁 相 朝¹⁾

I. 유럽공동체와 국경없는 放送

유럽經濟共同體(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그 설립을 위한 로마條約(the Treaty of Rome: 이하에서는 “유럽공동체조약”이라고 약칭함)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5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商品, 서비스, 資本, 勞動力 등의 자유로운 移動 및 流通’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입법적 노력을 해왔고 종국적으로는 3억 5천만의 인구로 구성되고 회원국의 국경이라고 하는 장벽이 없는 거대한 域內單一市場(Internal single market)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법제를 정비하여 왔다. 유럽공동체 단일시장에서의 放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노력을 해왔는데, 유럽공동체내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이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각 회원국의 방송관련법규가 유럽공동체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럽공동체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예컨대, 방송사업자의 영업활동 가운데 타회사의 債務保證이라거나 새로운 회사의 신설이나 합병을 위하여 타회사에 財政支援을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회원국 국내법이 資本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移動과 流通에 관한 유럽공동체 조약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된 바도 있다.²⁾

1) 외국법제연구실 수석연구원

2) Veronica사건(Case C-148/91), Financial Times (9 Feb., 1993); 제2부 외국
입법동향, 1.유럽법원판례 참조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유럽에 TV방송이 본격화한 이래 사실상 각국의 국내 TV방송국들이 국내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왔지만, 최근의 관련기술의 발전 특히 케이블방송기술과 위성방송기술(직접방송 및 고정서비스 포함)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각국 방송국의 국내 독점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었고, 유럽공동체내의 국경없는 방송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방송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유럽공동체 委員會(Commission)는 “放送”이라는 것도 유럽공동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지급을 전제로 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따라서 유럽공동체 조약의 “서비스供給의 自由(freedom to provide service)”³⁾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국내 방송관련 법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에 관한 緑書(Green Paper on Broadcasting)를 작성공표한 바 있다.

유럽공동체 理事會(EC Council of Ministers)는 바로 그려한 위원회 녹서를 기초로 하여 방송규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즉,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유럽공동체의 單一市場 형성과 발맞추어 유럽공동체 전체에 걸친 TV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12개 회원국들의 방송관련법규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방송관련법규의 조화를 위하여 1989년 10월에 “유럽공동체 會員國들에서의 TV방송활동에 관한 법률, 규칙, 행정법규 등의 법규정들의 조화”에 관한 指針⁴⁾(이하에서는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였고 회원국들은 1991년 10월 3일까지 동 방송지침에 따라서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후 곧 이어서 “국제적 방송에 관한 유럽협약”⁵⁾이 체결되었다.

3) 유럽공동체조약 (Treaty of Rome) 제55조 내지 제66조

4) Council Directive 89/552,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1989 O. J. (L 298) 23

5)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

II. 유럽공동체 放送指針의 내용

1. 放送프로그램의 製作과 内容 등에 관한 기준

(1) 放送서비스 供給의 自由

유럽공동체 放送指針은 유럽공동체 회원국내의 모든 방송물들이 방송지침의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방송물을 유럽공동체내에서 자유로이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로 되어 있다. 즉,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도 방송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견지에서, 유럽공동체조약에 규정된 서비스供給의 自由(Freedom to provide service)의 원칙에 따라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에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모두 자유롭게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물의 자유로운 공급은 원칙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방송내용이 인종이나 성별 또는 종교나 국적에 따른 差別과 증오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再送信(retransmission)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그리고 도덕적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다. 放送事業者가 그러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국내의 재송신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再送信의 禁止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는 바, 방송사업자가 의도적이고 중대한 기준위반을 하고 그러한 기준위반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년이내에 2번 이상의 기준위반을 한 바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기준위반에 관하여 유럽공동체 위

원회를 포함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⁶⁾

유럽공동체 放送指針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회원국 국내의 방송사업자가 제작·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지침에 규정된 최소요건에 부합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그러한 방송지침 요건에 부합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유럽공동체 회원국 域內 單一市場에서 자유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그러한 목적과 원칙에 위반된다고 문제된 회원국 국내법제가 있다.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英國의 放送法(Broadcasting Act)이 방송지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⁷⁾

문제된 영국의 방송법은 영국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外國의 위성방송사업자 및 외국의 케이블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기준, 특히 政治的 中立性과 뉴스보도의 公正性에 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의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별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영국의 방송법이 외국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規制基準이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기준에 부합하고 다른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이 영국에서는 영국 방송법 위반의 위험이 있고 따라서 외국 방송사업자는 영국에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기 위하여 영국 TV방송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로부터 별도의 추가적인 許可(license)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영국 방송법이 외국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방송지침과 영국 放送法이라고 하는 2중의 規制를 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영국의 국내 방

6) 유럽공동체 방송지침 제2(2)조 및 제22조

7) Ian S. Blackshaw and Gillian Hogg, *Sponsoring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the U.K. Broadcasting Act and the ITC Code*, [1992] 4 Ent. L.Rev. 138 참조

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기준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로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英國政府가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법제개선 등의措置를 취하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는 영국 방송법이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공동체法院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

(2) 廣告 및 後援에 관한 규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방송中 廣告에 관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中 광고의 시간을 일당 방송시간의 15퍼센트이내로 제한하고, 광고내용에 있어서도 기망적인 광고라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담배제품에 관한 광고는 전면 금지되어 있고,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⁹⁾

방송사업자는 광고수입이외에 각종 단체 및 업체로부터의 財政支援 또는 後援에 의존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放送後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에 의하면, 후원대상에 해당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일정(스케줄)이 후원자에 의해서 영향받거나 방송사업자의 기획·편집의 독자성에 대하여 후원자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또한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첫부분과 끝부분 또는 그 어느 한 부분에 후원자의 이름과 로그 또는 그 어느 하나를 표시함으로써, 후원사실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원받은 방송프로그램이 후원자나 제3자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홍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또는 대여를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8) Financial Times (Nov. 16, 1992), col. 1, p. 16,

9) 유럽공동체 방송지침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또는 제공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은 방송프로그램의 후원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規制對象”인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함은 모든 종류의 담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치료서비스를 뜻한다. 또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후원이 있을 수 없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¹⁰⁾

요약컨대,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유럽공동체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공급되어지는 방송프로그램들이 방송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방송지침의 기준에 부합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들에도 자유로이 공급될 수 있도록 供給의 自由를 확보해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그 내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통하여 방송을 규제하고 유럽공동체내의 문화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프로그램 공급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유럽공동체 조약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商品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流通”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유럽放送物”을 위한 放送時間 할당

유럽공동체의 방송지침은 유럽의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유럽 放送物 (European works)”을 위하여 과반수의 放送時間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색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전체 방송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뉴스, 스포츠, 각종 오락게임, 광고 그리고 텔레스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¹¹⁾ 그리고 유럽방송물을 위한 과반수의 방송시간 할당은 회원국 전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방송

10) 유럽공동체 방송지침 제17조

11) 유럽공동체 방송지침 제4(2)조

사업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요건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요건에 해당된다. 유럽방송물이라고 함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방송물을 의미하고 유럽에서 만들어진 방송물이라고 함은 주로 유럽에 거주하는 작자와 근로자에 의하여 제작되었고 그 제작이 유럽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작업자에 의하여 기획 통제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製作의 統制라고 함은 유럽제작업자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 뿐만아니라 유럽제작업자에 의하여 감독되고 현실적으로 통제되는 것 그리고 유럽제작업자와 다른 나라의 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유럽제작업자가 절반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공동제작이 그 다른 제작업자에 의하여 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¹²⁾

이와같이 유럽방송물을 위하여 과반수의 방송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방송지침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유럽에 엄청난 양의 放送物을 수출해온 미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방송시간의 과반수를 유럽 방송물에 한정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방송지침이 미국 방송물의 수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그러한 수입규제는 각종의 GATT규정들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보복을 고려하게 되었다.¹³⁾

유럽의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가운데 포함시킬 수 있는 外國放送物의 양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방송시간의 10퍼센트 또는 방송프로그램 예산의 10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제3의 방송프로그램제작업자들에 의하여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위하여 할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가 없는 한 영상저작물이 최초로 영화극장에서 상연된 이후 2년이내에는 당해 영상저작물을 방송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12) 유럽공동체 방송지침 제6조

13) Jon Filipek, "Culture Quotas": The Trade Controversy over the European Community's Broadcasting Directive, 28 Stanford J. Int'l L. 325, 332 (1992)

14) 유럽공동체 방송지침 제5조 및 제7조

III. 무역장벽으로서의 放送規制

1. 방송프로그램에 관련된 GATT규정들의 검토

현재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영화필름의 국제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GATT는 그 기본원칙의 하나인 内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GATT회원국들이 자국에서 제작된 국내 영화필름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법규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는 국내영화필름의 비율에 관한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¹⁵⁾ GATT회원국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국내영화필름의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100퍼센트 국내영화필름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내용의 국내법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TV방송프로그램은 GATT의 적용대상인 “商品”에 해당되지만 GATT의 영화필름에 관한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고 따라서 GATT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内國民待遇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 방송프로그램도 회원국 국내 방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필름과 방송프로그램과는 상이한 商品이라는 근거로서, 미국은 개념상으로 양자가 상이한데 GATT가 명백히 그 예외규정을 영화필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서, 양자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로와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은 GATT의 영화필름에 관한 예외규정이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영화필름과 방송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GATT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國際交易에 관한 논의는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協商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즉, 현행 GATT규정

1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여)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원국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방송프로그램과 영화필름에 관한 국제거래를 모두 서비스에 관한 국제교역으로 보아서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영화필름과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상저작물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교역에 관한 예외로서 각국의 文化의 同質性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둘것인지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럽공동체는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공연 및 방송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고, 미국은 영화필름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이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 등에 대한 침해라는 것은 이루 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2.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GATT위반여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그에 맞추어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미국등의 방송프로그램의 輸出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자, 미국은 그러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이 GATT 관련규정들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GATT 절차에 따라서 유럽공동체와의 쌍무협상을 요청하였다. 유럽공동체는 방송프로그램이 현행 GATT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서비스교역에 관한 우루과이협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쌍무협상의 요청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이 요청한 쌍무협상을 위한 미국측의 질문들에 답변을 하였다. 미국측의 질문과 유럽공동체의 답변을 중심으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GATT위반여부를 살펴본다.

GATT는 그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GATT회원국내의 상품 판매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와 국내 법규들은 국내의 상품과 수입된 외국의 상품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內國民待遇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이 유럽방송물의 방송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외국방송물에 대해서만 양적 제한을 하는 것은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이 외국방송물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GATT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나아가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이 유럽방송물에 대하여 과반수의 방송시간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입될 외국방송물에 대하여 量的인 制限을 가하는 것이고 일정한 수입쿼터를 규정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쿼터 등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GATT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미국측의 주장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은 商品去來가 아니라 서비스供給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 GATT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거래관행도 방송프로그램을 일회적으로 판매한다기 보다는 방송사업자가 일정 시간동안의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회수에 걸쳐서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비스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도 다수의 사례에서¹⁷⁾ 텔레비전방송이나 방송프로그램의 케이블공급은 서비스공급에 해당되고 따라서 유럽공동체 조약의 서비스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하여 왔다.

설사 방송프로그램이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는 현행 GATT규정하에서도 허용된다 는 점이 지적된다. 예컨대, 영화필름에 관한 GATT규정을 보면 言語와 文化的 同質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GATT회원국 자국의 영화필름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공연회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방송프로그램이 GATT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과반수의 방송시간을 할당하도록 규정하는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GATT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1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1조, 제21조 및 제22조

17) Procureur du Roi v. Debauve, 1980 E.C.R. 833 (1980); Jon Filipek, Op. cit., p. 350에서 재인용

있다. 현행 GATT규정은 영화필름에 관한 예외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예외규정으로서 자국의 公序良俗(public morals)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의 量的 制限으로서 쿼터제도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그리고 미국의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유럽공동체가 답변하는 것은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이 유럽방송물에 대하여 과반수의 방송시간을 할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where practicable)” 그리고 오직 “적절한 방법으로”만 이행하면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¹⁹⁾ 유럽방송물을 위한 과반수 시간할당의 규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IV. 貿易障壁으로서의 著作權

1. 著作權에 의한 市場分割

유럽공동체 역내의 단일시장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 및 자유로운 경쟁의 원칙이 기본원칙을 형성하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다른 한편, 知的所有權에 있어서는 공동체 회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共同體 전체에 걸쳐서 효력을 가지는 單一한 知的所有權制度는 존재하지 않고 회원국 각국의 별도의 지적소유권들이 병립하고 있는데, 그러한 각 회원국의 지적소유권이 회원국의 국경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으로 인하여 회원국의 국경에 따른 市場의 分割이 가능해지고 지적소유권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에 있어서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서비스와 상품에 관하여는 당해 지적소유권의 행사에 의해서 국경에 따라서 시장을 분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18)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조 및 제20조

19) 유럽공동체 방송지침 제4조

60년대 중반까지의 지배적인 견해였었다.²⁰⁾ 그러나 1958년에 6개국의 회원국으로 형성된 유럽經濟共同體에 의해서 共同體條約(Treaty of Rome)의 집행이 추진됨에 따라 지적소유권에 의하여 공동체시장이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은, 共同體域內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초로 한 자유롭고 공정한 競爭秩序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조약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 또는 그와 동일한 效果를 가지는 기타의 모든 조치들을 금지하고 있다.²¹⁾ 여기에서의 수량제한에는 輸·出入全面禁止도 포함되므로, 지적소유권자에 의한 수입금지도 “수량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에 해당된다. 공동체조약은 한편으로는 知的 所有權의 行使가 공동체시장에서의 去來에 대한 制限을 隱匿하거나 恣意的인 差別을 하기 위한 手段이 될 수는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소유권의 수입제한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서 수입의 제한 및 금지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2. 유럽공동체 法院의 判例

저작권이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CODITEL I”²³⁾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화제작업자로부터 “Le Boucher”라는 영화를 벨기에의 영화관에서 공연하고 TV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는데, 그 계약기간 도중에 동 영화제작업자는 동 영화를 독일 TV에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서독방송국에 양도하였고, 서독방송국이 동 영화

20) Valentine Korah, EEC Competition Law and Practice, (Oxford: ESC Pub. Ltd., 1981), p. 72.

21) 유럽공동체조약 제30조 내지 제36조

22) 유럽공동체조약 제36조

23) SA Compagnie Générale pour la Diffusion de la Télévision Coditel v SA Ciné Vog Films, Case 62/79, (1981) 12 IIC 207

를 방송하자 그 영화방송은 벨기에의 케이블방송회사그룹인 피고 CODI-TEL에 의하여 수신되어 피고의 정규 케이블방송서비스의 일환으로 수신자들에게 공급되었다. 원고는 著作權侵害의 소송을 제기했고 벨기에 제1심법원은 피고 CODITEL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CODITEL은 원고의 권리행사가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과 자유로운 경쟁의 원칙에 관한 공동체조약규정들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관한 공동체조약의 권위있는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 해석에 관하여 유럽공동체 법원의 예비판정을 요청하였다.²⁴⁾

공동체법원은 映像著作物의 소비자에의 공급은 공연을 통하여 무한정 반복될 수 있는데 반하여 소설등과 같은 전통적 문예저작물은 물질적인 사본의 제작 및 배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상저작물의 공급에 관한 저작권과 소설책 등의 판매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영상저작물의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는 TV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전달의 회수와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共同體法院은, 영상저작물의 방송 등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저작권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조약에 규정된 서비스공급의 자유 등의 원칙들이 그러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역적 제한 등을 합의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특정 회원국에서 영화필름의 공연 및 방송에 관한 排他的 權利를 부여받은 자가 동일한 영화필름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신되어 케이블방송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유럽공동체조약상의 서비스공급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著作物利用權者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된 것이다.²⁵⁾

24) 유럽공동체조약 제177조

25) Ysolde Gendreau, *The Retransmission Right: Copyright and the Rediffusion of Works by Cable* (Oxford, ESC Pub. Ltd., 1990), p.50

공동체법원은 본건에서의 저작권 행사가 유럽공동체조약의 경쟁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다. 즉, 유럽공동체조약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계약이나 협정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著作權者가 특정 국가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국가내에서만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국가내에서는 배타적인 방송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이 당연히 유럽공동체조약의 그러한 競爭制限禁止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공동체법원은 판시한 것이다. 각회원국의 국민들의 더빙이나 자신들의 국어로 된 자막의 추가 등에 관한 요구가 다양하고 유럽에서의 영화필름의 배포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CODITEL사건에서 방송과 공연에 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결코 경쟁제한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된 것이다.²⁶⁾

3. 유럽공동체 委員會의 指針(案)

(1) 방송프로그램 供給의 自由를 위한 著作權의 制限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은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放送에 관한 緑書”를 토대로 하여 마련된 것인데, 방송에 관한 녹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그 내용과 광고 및 후원 등의 규제에 관한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저작권의 문제에 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저작권에 관해서도 유럽공동체 차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즉,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유럽공동체 단일시장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을 조화시키고, 최소한의 법제개선의 방법으로서 유럽공동체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이 방송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공급에 대한 새로운 非關稅 貿易障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방송에 관한 위원회 녹서는 CODITEL사건에서와 같이 저작

26) CODITEL II (Case 262/81), [1982] ECR 3381; [1992] 10 EIPR 348에서
재인용

권이 방송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공급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강제이용허락(Compulsory license)을 인정하고 저작권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료율에 따른 보상을 받을 뿐인 것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는 각 회원국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著作權者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그 입장을 완화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유예기간에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와의 사이에 利用料에 관한 합의를 이룰수 있도록 요구하는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에 관한 녹서의 내용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그 내용과 광고 및 후원 등의 규제에 관한 의견만이 우선적으로 유럽공동체 방송지침의 형태로 입법화되었고, 저작권에 관한 위원회 안은 방송지침의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다.²⁷⁾

(2) 著作權 보호의 要求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이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하여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한 비판 가운데 가장 유력한 비판은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한 强制利用許諾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근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의 제한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프로그램 공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송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베른협약에서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다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미국이 카나다 및 멕시코와 체결한 北美自由貿易協約(NAFTA)에 의하면, 암호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전

27) Ysolde Gendreau, Op. cit., pp. 53-55

송衛星電波의 암호를 풀수 있는 기계장치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서 상업적활동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러한 위성전파를 수신하거나 암호를 풀어서 그러한 위성전파를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²⁸⁾ 북미자유무역 협약은 암호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위성전파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위성전파가 암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북미자유무역협약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著作權者 또는 著作隣接權者의 권리 (즉 放送事業者の 權利)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제한의 견해는 이러한 북미자유무역협약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규정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V.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는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송채널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방송서비스 供給의 自由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한편 유럽 고유의 文化를 유지하고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放送物”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른바 “문화的例外(cultural exception)”를 허용함으로써 美國 등의 외국 방송물의 유입에 대한 홀륭한 방파제를 마련하고 있다. 방송규제에 관한 두가지의 이러한 특징 가운데 방송서비스 공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송규제의 특징은, 유럽공동체 放送指針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그 내용 및 광고와 방송후원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방송지침의 기준에 부합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수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공급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회원국내에 자유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방송법에 관한 다툼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국들

28) 北美自由貿易協約(NAFTA) 제1707조

이 자국의 방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差別的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럽공동체 회원국내의 방송서비스 공급의 완전한 자유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방송지침을 통한 유럽공동체 域內의 單一한 放送市場의 형성과 위성 및 케이블 등의 통신기술의 발달에 크게 영향받는 법적문제의 하나로서 著作權者의 이익과 消費者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종전부터 방송프로그램이 국경을 넘어서 수신되어 왔는데 방송지침에 힘입어서 회원국의 국경을 초월한 커다란 방송시장이 확보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를바 放送產業이 커다란 성장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저작물의 공급증대와 이용활성화를 가져다 주고 저작권의 내용과 보호범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또는 著作權者와 著作物利用者)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방송에 관련된 저작권법의 조화에 관해서는 방송지침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정도까지 著作權者 또는 著作隣接權者의 배타적 권리를 허용해주고 그러한 배타적 권리에 입각한 이를바 市場分割을 허용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하나의 회원국만의 法制整備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유럽공동체 전체가 指針이나 規則을 통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라는 데 그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공동체의 방송규제에 관하여 특기할 점은 방송규제에서의 文化的例外라거나 著作權의 행사가 방송프로그램의 국제적 교역에 대한 새로운 非關稅障壁으로 된다는 점이다. 이점은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일본 등과의 通商協商을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에 임할 때에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점일 것이다. 특히 映畫產業도 절대적으로 資本의 논리가 지배하는 산업의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위성수신과 케이블방송이 대중화되면 24시간 계속하여 영화필름만 공급하는 방송채널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한 방송시장에 있어서 文化的例外라고 하는 설득력있는 통상규제논리를 통하여 고유의 文化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제2편 헝가리에서의 상표보호*

(Trademark protection in Hungary)

崔 哲 榮¹⁾

I. 헝가리 商標法의 背景

商標는 경제적 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헝가리의 경제환경 속에서 商標의 役割이 강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헝가리에서는 상표에 관한 업무를 特許廳(National Office of Inventions; 이하 NOI)에서 담당한다.²⁾

특허제도와 기타의 유사한 공업소유권제도는 기술적인 知的 創案物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排他的인 權利를 보장한다. 이 제도는 특허권자와 유용한 모델의 소유자를 보호하여 시장내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도록 한다. 이와 비교하여 商標의 保護는 상품을 구별하는 標識(sign)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그 상표의 사용에 있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상표는 상품의 出處의 同一性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상업적 명

* 이 글은 Hungarian Market Report(12/1992)에 게재된 M. Suemeghy의 "Trademark propection in Hungary"와 Hungarian Market Report(10-11/1992)에 게재된 Gyoergy Szemzoe의 "Right granting activity of the National Office of Invention"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

1) 외국법제연구실 선임연구원

2) National Office of Invention은 상표에 관한 업무 외에도 特許權, 產業디자인權, 實用新案權, 반도체칩 回路配置(topography) 등의 등록업무 그리고 이러한 權利와 관련된 訴訟節次와 保護에 관한 활동을 하여 우리나라의 特許廳(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特許廳(NOI)로 표기한다.

성의 획득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며 마케팅과 광고활동의 훌륭한 수단이 된다. 형가리의 工業所有權制度는 상표분야와 함께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독립적인 형가리商標法은 1895년의 특허법에 앞서 1890년에 제정되었다. 1890년의 법률제2호(Law No. II)는 工業所有權의 보호에 관한 파리協約의 基本原則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規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이었다.³⁾ 형가리가 국제적인 마크의 등록과 관련된 1891년의 협정에 1909년에 이미 가입하였다는 것은 형가리商標法傳統의 한 특징이다.

현행의 1969년 商標法(Law No. IX)은 60년대말의 경제개혁속에서 제정되었으며 同法의 立法的 基礎인 개혁정신으로 인해서 同法은 국제적인 발전의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경제적 변화과정 속에서도 경쟁과 관련된 기업의 마크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상표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 마크 뿐만 아니라 기타 예컨대, 保護의 附與, 保護의 期間, 保護期間의 滿了등 상표보호와 관련된 필수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규정들은 商標保護의 附與, 更新, 取消 그리고 소위 商標權侵害 與否의 決定 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特許廳(NOI)의 節次 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의 登錄原簿管理에도 적용된다.

II. 商標의 登錄

상표의 보호는 마크의 識別力を 기초로 하고 있다. 商標法의 定義에 따르면 “다른 상품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이하에서는 “상품”)를 식별하기에 적절한 마크”에 대해서 商標法上의 保護가 부여된다. 이러한 마크들은 상품에 특별하고 차별화되는 성격을 부여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해준다. 상표법은 이러한 識別력을 결여하고 있는 마크를

3) 형가리는 103개국(92년기준)의 회원을 갖고 있는 파리協約의 당사자로써 파리協約의 기본적 규정의 하나인 內國民待遇原則에 근거하여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 국민의 工業所有權을 내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특히 어떤 상표가 상품 그 자체를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標識로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가 오로지 상품의 종류, 수량, 또는 다른 필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差別的인 性格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는 문자, 문자의 합성, 도형, 도형의 합성, 소리 또는 빛의 합성에 의해 이루어 진다. 다른 상품과 차별적 구분이 가능한 상표도 法律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못한다.⁴⁾ 예컨대 혼란 — 특히 상품의 원산지, 수량에 관련된 혼란 — 을 유발하기 쉬운 標識(signs), 또는 제 3자의 個個人的权利를 侵害하는 標識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保護排除의 이유는 아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第3者의 利益을 위해 이전에 등록되어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標識의 보호를 금지함에 있는 것 같다.

商標登錄의 申請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부여된 기관이나 당사자에 의해 特許廳(NOI)에 출원될 수 있다.⁵⁾ 登錄申請書는 최소한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등록할 마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열거해야 한다. 상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指定商品의 목록이 후속적으로 확대되어질 수 없다는 法規定을 고려하면 신청자의 활동영역에 바탕을 둔 指定商品目錄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⁶⁾

헝가리는 국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分類와 관련된 니스協定(Nice Agreement)의 當事者이기 때문에 상품은 이 협정의 분류에 따라 분류되

4) 우리나라 商標法은 第7條에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5) 외국인들은 헝가리에 주소를 둔 代理人를 통해서 工業所有權을 취득하기 위한 申請書를 제출할 수 있다. 헝가리에는 유럽의 辦理士資格기준을 갖춘 辦理士(patent attorney)들이 있기 때문에 特許廳에서의 절차는 辦理士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헝가리는 자국에서 일어나는 政治制度와 所有權制度의 變化에 따라 辦理士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法制를 마련하고 있다.; 政治制度 및 所有權制度變化에 관하여는 문준조,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한국법제연구원:1992) 참조

6) 그러나 活動範圍가 擴大되는 경우 동일한 기업은 다른 상품과 관련된同一 商標에 대한 保護를 다시 要請할 수 있다.

여져야 한다. 하나의 신청서내에서도 몇 개의 상품부류에 속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어 진다. 登錄節次는 形式的 審查와 實質的 審查가 포함된다.⁷⁾ 즉 등록가능성에 대한 모든 法律的 條件들이 공식적 審查의 대상이다. 만약 등록하고자 하는 마크가 법률상의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特許廳(NOI)은 그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에 의해 획득되는 상표의 보호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0년의 存續期間을 갖게되며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更新할 수 있다.

III. 商標保護의 更新과 期間의 滿了

상표보호의 개신은 상표등록부에 기록된 商標의 所有者에 의해 特許廳(NOI)에 신청된다. 만약 만료일로 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개신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표의 보호는 중지된다. 이 경우에 商標保護의 期間滿了日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한 상표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商標法의 중요한 규정이다.

또한 상표의 보호는, 예컨데 제3자의 優先的 權利(prior right)가 고려되지 않아 상표의 등록이 法律에 反하는 경우, 特許廳에 의해 시작되는 登錄取消節次의 결과로써 消滅될 수 있다.⁸⁾ 만약 상표가 5년 동안 계속해서 형가리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商標의 登錄取消가 이루어진다.⁹⁾ 상품과 포장지상의 상표표시 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서신왕래나 광고에서의 상표 사용도 적절한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어 질 수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상

7) 형가리에서는 다수의 專門要員으로 구성된 선진공업국의 特許官廳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의 審查官(examiner)이 特許廳(NOI)에 소속되어 登錄業務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각 審查官은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형가리의 法律에 따르면 이에 대한 異議申請節次(opposition procedure)는 존재하지 않는다.

9) 우리나라의 商標法은 “商標權者 · 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日전 3年 이내에 國內에서 그 登錄商標를 어느 指定商品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同法 第42條第2項 但書)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絕査定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의 登錄申請은 폭주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상표는 단지 다른 당사자에 의한 商標權取得을 방해할 뿐이며 경제적 경쟁에서 상표의 진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lack of use)에 근거한 取消節次는 형가리에서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물론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의 취소를 요구하는 측의 진술에 대항하여 상표보호의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方法과 範圍에 해당하는 商標使用事實을 立證해야 한다. 상표의 보호는 또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 기업이 法的인 承繼者없이 도산한 경우에도 소멸된다.

IV. 商標權 非侵害(non-infringement)의 決定

상표의 不法使用의 경우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訴訟節次가 개시되기도 한다. 商標權侵害訴訟은 등록된 상표에 근거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¹⁰⁾

자신에 대한 商標權侵害訴訟이 제기될 것이 우려되는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마크가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特許廳(NOI)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法院은¹¹⁾ 상표권보호의 부여, 상표의 취소 그리고 商標權의 非侵害 등에 관련된 特許廳(NOI)의 결정을 審理할 수 있다.

V. 商標登錄原簿의 管理

特許廳(NOI)은 등록된 상표의 등록원부를 관리한다. 등록원부에는 상

10) 상표권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標識의 模倣에 대해서는 不公正 市場去來行爲를 禁止하는 法規定에 근거한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11) 特許廳(NOI)의 決定에 대한 審理要求는 3인의 전문적 法官(professional judges)에 의해 구성되는 부다페스트 首都法院(Metropolitan Court)에 제기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首都法院의 判決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最高法院(Supreme Court)에 上訴할 수 있다.

표의 개선 또는 영구적인 소멸, 소유권자의 변경과 같은 상표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商標와 관련된 契約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상표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negotiable right)이다. 즉 상표는 양도되어 질 수 있으며 상표의 使用契約 (license)으로 제3자에게 商標使用權이 부여된다. 市場經濟體制하에서 상표사용허가 및 양도계약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商標는 企業資產의 일부로 간주되며 좋은 평가를 받는 잘 알려진 상표는 상당한 가치를 내포한다.

契約의 登錄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표에 대한 어떤 권리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善意로 權利를 取得한 제3자에 대하여 法的으로 對抗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상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特許廳(NOI)에 접수된 商標登錄申請件數에¹²⁾ 반영되어 있다. 1991년에 등록된 3,725건의 상표권등록신청은 1980년의 신청건수 보다 10배가 많은 것이었다. 마드리드協定에 의한 國際商標登錄申請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어서 1991년의 등록신청은 1980년의 등록신청보다 두배 늘어난 5,263건에 그쳤다.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國內的 登錄商標의 숫자는 거의 17,000건이며 형가리에서 유효한 國際的 登錄商標의 숫자는 158,000건 이상이다.

대다수의 상표등록은 최신 컴퓨터기술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과 特許廳 자체의 재원을 통해서 현대적인 電算化 體系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1993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여건의 발전 외에도 商標法의 現代化 또한 의안에 들어있다. 이 작업은 각국의 商標法간의 調和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EC)내에서 法의 調和(harmonisation)를 위해¹³⁾ 國際知的所有權機構(WIPO)에 의해 최근

12) 현재 상표등록외에 特許廳(NOI)이 부여한 特許權의 件數는 2백만건을 넘는다. 선진산업국가의 특허권부여건수에 비교하면 많지 않지만 형가리의 역사적 경험 즉, 共產主義的 經濟運用의 期間과 影響을 고려하면 이는 다른 東歐圈國家와 비교되는 놀라운 숫자이다.

13) 형가리는 관련 法規의 改正, 審查官들의 業務方法改善, 審查官들의 思考方式의 "유

에 제안된 國際條約에 예견되어져 있다. 特許廳(NoI)의 목적은 유럽수준의 형가리法制와 시장경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法慣行의 존재를 立證하는 상표관련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럽화(Europeanization)", 最新技術裝備의 導入 등을 통해 유럽共同體加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 2 부

외국입법동향

제1편 외국입법동향색인

I. 분류기준표(러시아·동구·중국)

분 야	대한민국 현행 법령 집 해 당 항 목
憲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業·經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林·水產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境·保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院·法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

* 유럽공동체의 입법동향은 유럽공동체의 분류기준에 따름

II. 외국입법동향목록

1. 유럽공동체 입법동향

(1) 유럽공동체 입법 46

〈회원국 국내법의 조화(Harmonisation)〉 46

- 이사회지침 92/73 (92년 9월22일)
- 이사회지침 92/74 (92년 9월22일)
- 이사회지침 92/75 (92년 9월22일)
- 위원회지침 92/86 (92년 10월21일)

〈농업분야〉 46

- 위원회규칙(EEC) No.3002/92 (92년 10월16일)
- 위원회지침 92/76 (92년 10월6일)
- 위원회규칙(EEC) No.3288/92 (92년 11월12일)
- 이사회지침 92/92 (92년 11월 9일)
- 이사회지침 92/93 (92년 11월 9일)
- 이사회지침 92/94 (92년 11월 9일)

〈반덤핑〉 47

- 위원회규칙(EEC) No.2848/92 (92년 9월28일)
- 이사회규칙(EEC) No.2849/92 (92년 9월28일)
- 이사회규칙(EEC) No.2966/92 (92년 10월12일)
- 이사회규칙(EEC) No.2967/92 (92년 10월12일)
- 이사회규칙(EEC) No.3017/92 (92년 10월19일)
- 이사회규칙(EEC) No.3068/92 (92년 10월23일)
- 이사회규칙(EEC) No.3263/92 (92년 11월9일)

○ 이사회규칙(EEC) No.3264/92 (92년 11월9일)	
○ 위원회규칙(EEC) No.3296/92 (92년 11월12일)	
 〈공동통상정책 - 대외관계〉	48
○ 이사회규칙(EEC) No.2875/92 (92년 9월21일)	
○ 이사회규칙(EEC) No.3105/92 (92년 10월26일)	
○ 이사회규칙(EEC) No.3106/92 (92년 10월26일)	
 〈회사법규〉	49
○ 이사회지침 92/101(92년 11월23일)	
 〈관 세〉	49
○ 위원회규칙(EEC) No.3001/92 (92년 10월16일)	
 〈환경〉	49
○ 이사회지침 92/72 (92년 9월21일)	
 〈어업〉	49
○ 이사회규칙(EEC) No.2885/92 (92년 9월28일)	
 〈식료품〉	49
○ 이사회규칙(EEC) No.3279/92(92년 11월9일)	
○ 이사회규칙(EEC) No.3280/92(92년 11월9일)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	50
○ 이사회지침 92/85(92년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91(92년11월3일)	
 〈지적소유권〉	50
○ 이사회지침 92/91(92년11월19일)	

〈세 제〉	50
○ 이사회지침 92/77 (92년 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78 (92년 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79 (92년 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80 (92년 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81 (92년 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82 (92년 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83 (92년 10월19일)	
○ 이사회지침 92/84 (92년 10월19일)	

(2) 유럽법원판례

〈회원국 국내법의 조화〉	51
○ E.C.Commission v. U.K., European Ct.J., C-337/89, December 10. 1992.	
○ M. H. Marshall v. Southampton and South-West Hampshire Area Health Authority, European Ct.,J., C-271/91, January 26. 1993.	
〈농업분야〉	52
○ Haneberg(Helmut) v. Bundesanstalt fr Landwirtschaftliche Marktordnung, European Ct.J., C-28/91, July 1. 1992.	
〈공동농업정책〉	52
○ Germany v. E.C. Commission, European Ct. J., C-240/90, November 3, 1992.	
○ Leendert Van Der Tas, European Ct. J., C-143/91, October 20, 1992.	

- Sanders Adour SNC ET Guyomarc'h Orthez Nutrition Animale S.A. v. Director of Tax Services for Pyrenees-Atlantiques, European Ct. J., C-149/91 and 150/91, June 11, 1992.
- Maier v. Freistaat Bayern Europaen Ct.J., C-236/90, July 9, 1992.

〈반덤핑〉 54

- Extramet Industrie S.A. v. E.C. Council, European Ct. J., C-358/89, June 11, 1992.

〈경쟁〉 55

- Publishers' Association v. E.C. Commission, European Ct. J., T-66/89, November 7, 1992.
- Direccion Gener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v. Asociacion Espanola De Banca Privada, European Ct.J., C-67/91, July 16, 1992.
- Vereniging Van Samenwerende Prijsregelende Organisaties In De Bouwnijverheid(SPO) v. E.C. Commission CFI, T-29/92R, July 16, 1992.
- Publishers' Association v. E.C. Commission CFI, T-66/89, July 9, 1992.

〈유럽공동체기구〉 57

- 유럽법원 - Meilicke(Wienand) v. ADV/ORGA F.A.Meyer AG European Ct.J., C-83/91, July 16, 1992.
- 유럽의회 - European Parliament v.E.C. Council, European Ct.J., C-65/91, July 16, 1992.

〈환경〉	57
○ E.C. Commission v. Belgium, European Ct. J., C-2/90, July 9, 1992.	
〈어업〉	58
○ Portugal and Spain v. E.C.Council, European Ct.J., C-63/ 90, 67/90, 70/90, 71/90, 73/90, October 20, 1992.	
〈상품의 자유이동〉	59
○ Simba S.p.A.; Comafrika S.p.A.; Camar Srl; Co-Frutta S.p.A. & Chiquita Italia v. Italian Ministry of Finance, European Ct. J., C-228-234/90, 333/90, 353/90, June 9, 1992.	
○ Generics(U.K.) & Harris Pharmaceuticals v. Smith Kline & French Laboratories, European Ct. J., C-191/90, No- vember 3, 1992.	
○ Etablissements Delhaize Freres & Compagnie le Lion S. A., v. Promalvin S.A. & Age Bodegas Unidas S.A. Europe- an Ct. J., C-47/90, June 9, 1992.	
○ E.C. Commission v. Greece, European Ct.J.,C-137/91, June 24, 1992.	
○ Commission v. Italy, Greece and France, European Ct.J., C-95/89, 293/89,344/90, July 16,1992.	
○ 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v. Legros, European Ct.J., C-163/90,July 16, 1992.	
○ Belgium v. Societe Cooperative Belovo, European Ct.J., C-187/91, July 16, 1992.	
○ Vereniging Veronica Omroep Organisatie v. Commissari- at voor de media, European Ct.,J., C-148/91, Feb. 3. 1993.	

〈사람의 자유이동〉	63
○ Office National des Pensions(ONP) v. Di Crescenzo, European Ct. J., C-90/91 and 91/91, June 11, 1992.	
○ Belgium v Taghavi, European Ct.J., C-243/91, July 8, 1992.	
○ Knoch v. Bundesanstalt fr Arbeit, European Ct. J., C-102/91, July 8, 1992.	
○ European Parliament v. E.C.Council, European Ct. J., C-295/90, July 7, 1992.	
○ Hughes v. Chief Adjudication Officer, European Ct.J., C-78/91, July 16, 1992.	
 〈설립의 자유〉	66
○ E.C.Commission v. Luxembourg, European Ct. J., C-351/90, June 16, 1992.	
○ Micheletti v. Delegacion Del Gobierno en Cantabria, European Ct. J., C-369/90, July 7, 1992.	
○ R. v. Immigration Appeal Tribunal and Singh(Surinder), ex p.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uropean Ct. J., C-370/90, June 7, 1992.	
○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Laderer, European Ct.J., C-147/91, June 25,1992.	
 〈수입〉	68
○ E.C.Commission v. Greece, European Ct. J., C-65/91, October 20, 1992.	
 〈관할권〉	68
○ Jakob Handte GmbH v. Traitements Mecano-Chimiques des Surfaces, European Ct. J., C-26/91, June 17, 1992.	

〈성차별〉	69
○ R. v.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curity, ex p.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uropean Ct. J., C-9/91, July 7, 1992.	
〈제6부과가치세지침〉	69
○ E.C.Commission v. Spain, European Ct. J., C-96/91, June 9, 1992.	
〈사회보장〉	70
○ Jackson v. Chief Adjudication Officer, Eropean Ct.J., C-63/91 and 64/91, July 16, 1992.	
〈국가원조〉	70
○ Spain v. E.C. Commission, European Ct. J., C-312/90, June 30, 1992.; Italy v. E.C.Commission, European Ct. J., C-47/91, June 30, 1992.	
〈세 제〉	71
○ Weber Haus GmbH & Co. KG v. Finazamt Freiburg Land, European Ct. J., C-49/91, October 20, 1992.	
○ Commerz-Credit Bank AG-Europartner v. Finanzant Saarbcken, European Ct. J., C-59/91.	
○ Dias v. Director Da Alfandega Do Porto, European Ct.J., C-343/90, July 16, 1992.	
〈운 송〉	72
○ Licensing Authority South Eastern Traffic Area v. British Gas, European Ct.J., C- 116/91, June 25, 1992.	

- 〈부가가치세〉 73
- E.C. Commission v. Germany, European Ct. J., C-74/91, November 3, 1992.
 - "K" Line Air Service Europe B.V. v. Eulaerts N.V. And Belgium, European Ct.J., C-131/91, July 9, 1992.

2. 러시아 · 동구의 입법동향

(1) 러시아 입법동향

- 〈산업 · 경제〉 74
- 消費者의 權利保護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
 - 에너지자원 기타 생산품 및 서비스의 價格에 관한 國家規則에 대한 러시아聯邦政府의 規則
 - 러시아聯邦 暫定關稅에 관한 大統領令
 - 상표,서비스마크 및 상품의 原產地名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
 - 상표,서비스마크 및 상품의 原產地名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의 施行에 관한 러시아聯邦最高會議의 規則
 - 경제에 있어 지불청산을 개선하고 기업소재공화국에 대한 企業의 責任強化를 위한 緊急措置
 - 러시아연방에서 債權證書制度의 施行에 관한 大統領令
 - 聯邦 및 市有企業의 私有化過程에 있어 證券市場設立措置에 관한 러시아聯邦大統領令
 - 外國人法人的 이득세 및 소득세에 관한 러시아聯邦國稅廳의 指針

- 〈법원 · 법무〉 77
- '質權'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에 대한 러시아聯邦最高會議 規則
 - 質權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

(2) 형가리입법동향

〈사회·문화·교육〉	77
○ 노동자의 部分所有制計劃에 관한 1992년 法律 제44호	
〈산업·경제〉	78
○ 通貨流通에 관한 형가리 國立銀行總裁令	
◆ 通貨流通業務修行에 관한 細部規則 :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1호	
◆ 通貨流通書式의 記載와 利用에 관한 規則 :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2호	
◆ 通貨流通의 細部事項表에 관한 規則 :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3호	
◆ 現金流通에 관한 情報의 公開 :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4호	
◆ 銀行計定과 관련된 情報의 公開 :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5호	
○ 영구히 國家所有로 남는 企業資產의 管理와 利用에 관한 1992년 法律 제53호	

3. 중국입법동향

〈외교·국방〉	80
○ 越南과 投資保障協定, 經濟技術協力協定, 科學技術協力協定 및 文化協定	
〈산업·경제〉	80
○ 株式制度試行企業人事管理暫定辦法	
○ 株式制度試行企業物資購入販賣管理에 관한 暫定規定	
○ 企業財務通則 및 企業會計準則	
○ 會社法(草案)	
○ 中外合資合作經營企業會計辦法	

- 貯蓄管理條例
- 中華人民共和國稅關의 出入國旅客의 物品申告에 관한 規定 및 中華人民共和國稅關의 出入國旅客의 “紅綠通路”選擇通關規定
- 中華人民共和國 商標法改正案 및 農業技術維持擴大法
- 測量法

〈환경·보건〉 84

- 「藥品行政保護條例」

〈법원·법무〉 84

- 重慶市의 外國人土地投機制限을 위한 規定
- 廣東省珠海經濟特區不動產管理條例
- 航空機拉致犯의 處罰에 관한 決定

〈판례〉 85

- 投資紛爭의 管轄權 決定
- 合營(合作)企業에서 外資側 出資不履行에 대한 중국측의 處理方法
- 中華人民共和國身分證明管理條例의 適用事例

제2편 유럽공동체입법동향

I. 유럽공동체입법동향

1. 유럽공동체 입법

〈회원국 국내법의 조화(Harmonisation)〉

○ 이사회지침 92/73 (92년 9월22일)

- 약품과 관련된 법률, 규칙 또는 행정법규에 의해 제정된 法規定들의 域內調和에 관한 지침 65/65와 75/319의 범위확대 및 동종요법 (homoeopathic)의 약품에 관한 추가규정

○ 이사회지침 92/74 (92년 9월22일)

- 가축약품과 관련된 법률, 규칙 또는 행정법규에 의해 제정된 法規定들의 域內調和에 관한 명령81/851의 범위확대 및 동종요법 (homoeopathic)의 약품에 관한 추가규정

○ 이사회지침 92/75 (92년 9월22일)

- 가사도구의 에너지 및 다른 자원의 소비량을 표시하기위한 분류표 및 표준제품정보의 表示制度에 관한 지침

○ 위원회지침 92/86 (92년 10월21일)

- 화장품과 관련한 會員國法制의 類似化(Approximation)에 관한 이사회지침 76/768의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에 대한 기술적인 전 전을 채택

〈농업분야〉

○ 위원회규칙(EEC) No.3002/92 (92년 10월16일)

- 생산품의 사용 및 목적지증명을 위한 공동의 세목화된 규정의 제정

○ 위원회지침 92/76 (92년 10월6일)

- 공동체내에서 위험에 노출된 특정 수목의 보호지역인정

○ 위원회규칙(EEC) No.3288/92 (92년 11월12일)

- 올리브기름 및 올리브잔류기름의 특성과 관련된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2568/91의 개정

○ 이사회지침 92/92 (92년 11월 9일)

- 지침 75/268의 개념범위에 속하는 독일내 農業非適格地帶(less-favoured farming areas)에 대한 공동체목록에 관련된 지침 86/465의 개정

○ 이사회지침 92/93 (92년 11월 9일)

- 지침 75/268의 개념범위에 속하는 네덜란드내의 農業非適格地帶(less-favoured farming areas)에 대한 공동체목록에 관련된 지침 75/275의 개정

○ 이사회지침 92/94 (92년 11월 9일)

- 지침 75/268의 개념범위에 속하는 이탈리아내의 農業非適格地帶(less-favoured farming areas)에 대한 공동체목록에 관련된 지침 75/273의 개정

〈반덤핑〉

○ 위원회규칙(EEC) No.2848/92 (92년 9월28일)

- 일본을 原產地로 하는 대형전기수용기(large electrolytic capacitors)의 공동체내 수입에 대한 잠정반덤핑관세의 연장

○ 이사회규칙(EEC) No.2849/92 (92년 9월28일)

- 일본을 原產地로 하는 최대외부직경 30mm를 초과하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의 수입에 대한 잠정적 반덤핑관세의 연장

○ 이사회규칙(EEC) No.2966/92 (92년 10월12일)

- 인도네시아 및 한국 등을 原產地로하는 monosodium glutamate의 특정 수입품에 대한 잠정적 반덤핑관세와 관련한 규칙 1798/90의 개정

○ 이사회규칙(EEC) No.2967/92 (92년 10월12일)

- 일본을 原產地로 하는 DRAM으로 알려진 특정종류의 전자소회로(microc-ircuits)의 수입에 잠정적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규칙

2112/92의 개정과 잠정적 잠정관세의 징수

- 이사회규칙(EEC) No.3017/92 (92년 10월19일)
 - 루마니아, 대만, 터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및 마케도니아를 原產地로 하는 합성폴리에스터섬유의 수입에 적용되는 반덤핑조치의 심사에 따르는 반덤핑관세의 조정 및 멕시코와 미국을 原產地로하는 합성포리에스터의 수입과 관련한 심사의 종료
- 이사회규칙(EEC) No.3068/92 (92년 10월23일)
 - 벨로루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原產地로 하는 칼륨염화물(Potassium chloride)의 수입에 잠정적 반덤핑관세부과
- 이사회규칙(EEC) No.3263/92 (92년 11월9일)
 - 일본을 原產地로하는 경사진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s)의 외부링(ring)의 공동체내 수입에 부과되는 잠정 반덤핑관세의 확대
- 이사회규칙(EEC) No.3264/92 (92년 11월9일)
 - 인디아와 한국을 原產地로 하는 폴리에스터 합성섬유의 수입에 부과되는 잠정 반덤핑관세의 확대
- 위원회규칙(EEC) No.3296/92 (92년 11월12일)
 -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크로아티아를 原產地로 하는 일정한 이음매없는 파이프와 관(tube), 철 또는 강철의 수입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슬로베니아와 관련한 반덤핑소송의 종결

〈공동통상정책 - 대외관계〉

- 이사회규칙(EEC) No.2875/92 (92년 9월21일)
 - 규칙 288/80의 일정한 數量制限을 폐지하고 부칙1을 개정함
- 이사회규칙(EEC) No.3105/92 (92년 10월26일)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및 마케도니아를 原產地로 하는 생산품의 共同體內輸入에 적용되는 합의와 관련된 규칙 545/92의 개정

○ 이사회규칙(EEC) No.3106/92 (92년 10월26일)

- 알바니아인에 대한 농산물의 非常供給措置

〈회사법규〉

○ 이사회지침 92/101(92년 11월23일)

- 公益(public)有限責任會社의 형성과 그 회사의 자본유지 및 변경에 관한 지침 77/91의 개정

〈관세〉

○ 위원회규칙(EEC) No.3001/92 (92년 10월16일)

- 關稅倉庫에 관한 의회규칙 2503/88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규칙 2561/90의 규정을 개정

〈환경〉

○ 이사회지침92/72 (92년 9월21일)

- 오존에 의한 大氣污染에 관한 지침

〈어업〉

○ 이사회규칙(EEC) No.2885/92 (92년 9월28일)

- 1991년 6월20일부터 94년 6월19일까지의 코모로근해에서의 어업에 관한 EEC와 코모로공화국간의 협정에 규정된 漁業機會 및 寄附金納入을 시작하는 의정서의 결정

〈식료품〉

○ 이사회규칙(EEC) No.3279/92(92년 11월9일)

- 향첨가주류, 향첨가 주류성음료(wine-based drink) 그리고 향첨가 주류상품각테일의 정의(definition), 표시(description), 소개(presentation)에 관한 一般原則을 制定한 지침 1601/91의개정

○ 이사회규칙(EEC) No.3280/92(92년 11월9일)

- 알콜함유량이 높은 주류(spirit drinks)의 정의, 표시(description), 소개(presentation)에 관한 一般原則을 制定한 지침 1576/89의 개정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

○ 이사회지침 92/85(92년10월19일)

- 임신한 근로자와 최근 출산한 근로자 및 수유근로자의 職場에서의 安全과 保健側面의 개선을 장려하는 법규의 도입

○ 이사회지침 92/91(92년11월3일)

- 광물추출산업에서 勤勞者의 安全과 健康保護改善을 위한 최소기준과 관련된 지침

〈지적소유권〉

○ 이사회지침 92/91(92년11월19일)

- 지적소유권분야에 있어서의 著作權과 관련된 著作隣接權과 公衆貸與權 및 圖書貸與權에 관한 지침

〈세 제〉

○ 이사회지침 92/77 (92년 10월19일)

- 共同附加價值稅(VAT)體制의 補完 및 명령77/388(부가가치세율의 추정)의 개정

○ 이사회지침 92/78 (92년 10월19일)

- 매상세(turnover taxes)이외의 담배제품의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에 관한 지침72/464 및 79/32를 개정

○ 이사회지침 92/79 (92년 10월19일)

- 퀘련(cigarettes)세의 추정

○ 이사회지침 92/80 (92년 10월19일)

- 퀘련(cigarettes)외의 담배제품에 대한 稅金의 推定

○ 이사회지침 92/81 (92년 10월19일)

- 광유(mineral oils)에 대한 國內消費稅構造의 調整

○ 이사회지침 92/82 (92년 10월19일)

- 광유(mineral oils)에 대한 國內消費稅率의 推定

○ 이사회지침 92/83 (92년 10월19일)

- 알콜 및 알콜성 음료에 대한 國內消費稅構造의 調整

○ 이사회지침 92/84 (92년 10월19일)

- 알콜 및 알콜성 음료에 대한 國內消費稅率의 推定

2. 유럽법원판례

〈회원국국내법의 조화〉

○ E.C.Commission v. U.K., European Ct.J., C-337/89, December 10. 1992.

〈판결요지〉 食水의 수질에 관한 1980년의 이사회지침(80/778/EEC)은 회원국에게 일정한수질수준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특별한 상황은 義務不履行의 정당화사유로 주장될 수 없다.

○ M. H. Marshall v. Southampton and South-West Hampshire Area Health Authority, European Ct.J., C-271/91, January 26. 1993.

유럽법원은 性差別에 근거한 不當解雇에 관한 소송에서(제1차 Marshall 사건), Marshall에게 그녀의 고용주인 Southampton 및 South West Hampshire 지역보건당국(Area Health Authority)에 대하여 EC지침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勞動法院(The Industrial Tribunal)은 그녀의 손실액을 18,405파운드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이자 7,710파운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관련 법규하에서, 그 시기에 Marshall에게 지급될 수 있었던 최고한도의 보상액은 6,250파운드였다.

유럽법원은 그와 같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國內的 制限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판결요지〉 유럽법원은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에 의하여 제기된 ‘法院은 지급가능한 이자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판결을 자체적으로 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원은 일반적인 보

상금의 한도액과 관련하여 보다 광범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관련되는 EC법에서의 權利의 範圍와 內容을 결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EC법의 관련조항이 會員國 國內法院에서 회원국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이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國內的 補償額의 限界는 그 자체로는 非合法的인 것이 아니지만, 평가된 補償額은 확정된 損害額과 부합하는 것(상당한 因果關係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농업분야〉

- Haneberg(Helmut) v. Bundesanstalt fr Landwirtschaftliche Marktordnung, European Ct.J., C-28/91 July 1, 1992.

콩의 가공에 대한 공동체 特別財政支援法規에 의해 규정된 최저가격에 의한 購買保證과 관련된 소송에서 위원회규칙(540/85)의 제6조(5)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판결요지〉 콩의 가공에 대한 공동체 特別財政支援法規의 適用에 있어 최저가격의 총액이 콩생산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콩 購買者는 규정된 財政支援金을 請求할 수 없고 최저가격 총액과의 差額을 추가적으로 지급한 때에만 비로소 財政支援金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농업정책〉

- Germany v. E.C. Commission, European Ct. J., C-240/90, November 3, 1992.

EC법은 회원국 정부에게 EC의 援助를 신청함에 있어 变칙(irregularities)을 행한 농민들을 관련 援助計劃으로부터 1년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C위원회는 추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독일은 (1) 위원회가 농민을 원조계획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오로지 이사회 만이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1) 변칙을 행한 농민들을 援助計劃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排除權(exclusion power)은 일반적 農業政策에 부합되는 것이며, 공동체는 그러한 조치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이사회는 위원회에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權限을 委任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Leendert Van Der Tas, European Ct. J., C-143/91, October 20, 1992.

〈판결요지〉 自國內에서 호르몬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의 구매, 소유, 소지 및 매매를 금지하는 네덜란드법은, 비록 그것이 EC法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EC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EC法은 호르몬을 동물에 주입하거나 호르몬이 주입된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네덜란드법은 EC法의 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 Sanders Adour SNC ET Guyomarc'h Orthez Nutrition Animale S.A. v. Director of Tax Services for Pyrenees-Atlantiques, European Ct. J., C-149/91 and 150/91, June 11, 1992.

특정곡물에 대하여 準財政稅(parafiscal charge)가 부과되자 그러한 준재정세가 유럽공동체 조약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판결요지〉 준재정세가 특정 곡물의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고 회원국 국내에서 경작된 곡물에 대해서는 징수된 준재정세가 환급되어지며 징수된 나머지 준재정세는 모두 국내 경작업자의 財政支援에 쓰여진다면 그러한 준재정세는 유럽공동체조약 제12조에서 금지되어 있는 관세에 해당되고 同條約 제92조에 규정에서 금지된 國家補助金支給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문제된 준재정세를 모두 회원국 국내 경작업자의 재정지원에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

경작업자의 세금부담을 삭감하여 주는 것이므로 유럽공동체조약(제95조)이 금지하고 있는 差別的租稅(discriminatory tax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Maier v. Freistaat Bayern, Europaen Ct.J., C-236/90, July 9, 1992.

耕作地를 貸貸하여 요구되는 만큼의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委託生產數量(reference quantity)의 할당을 거부한 바이에른 공화국의 조치에 대한 訴訟에서 위원회 규칙1546/88의 제3조a항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제기되었다.

〈판결요지〉 경작지가 임대된 경우에는, 貸貸人은 생산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경작지의 사용권을 갖는 貸借人만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신 소유의 경작지를 임대하여 준 농민은 그 경작지와 관련하여서는 생산자가 아니며, 그 결과 委託生產數量(reference quantity)의 할당에 관한 權利는 박탈된다. 경작지를 임대하여 준 농민들이 委託生產數量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市場價值(market value)에 기인한 財政的 利益獲得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임대인에 대한 취급과 생산자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의 差異는 객관적으로 正當化될 수 있으며 결코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덤핑〉

- Extramet Industrie S.A. v. E.C. Council, European Ct.J., C-358/89, June 11, 1992.

공동체 최대의 칼륨礦 輸入業者인 E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수입되는 칼륨광에 暫定的 反덤핑關稅를 부과하는 이사회규칙(2808/89)의 無效를 청구하였다. E는 공동체의 關聯產業이 입은 被害算定에 잘못이 있으며, 특히 공동체내의 유일한 칼륨礦 生產業者인 P는 E에게 생산물의 提供을 拒絕함으로써 P자신의 損害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특정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의 수입 등에 대하여 일정한
반덤핑 關稅를 부과하는 이사회규칙(2808/89)은 無效이다. 同 규칙
의 無效主張을 반박하기 위해 이사회는 문제된 규칙 前文의 사실열거
부분(recital) 제15문을 언급함에 그치고 있다. 사실열거부분으로부
터는 사실상 공동체내의 유일한 칼륨礦 生產者인 P가 광물의 販賣拒
絕로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 증명된 損害가 原告가 주
장하고 있는 要素에서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이사회가 검토하였는
지 알 수 없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이사회는 발생한 損害를 정확하게
算定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쟁〉

- Publishers' Association v. E.C. Commission, European Ct. J., T-66/89, November 7, 1992.

〈판결요지〉 출판인협회는 EC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價格維持體
制(price maintenance system)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는 회원
국의 市場내의 출판산업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므로 EC
競爭法에 대한例外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Direccion Gener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v. Asociacion Espanola De Banca Privada, European Ct.J., C-67/91, July 16, 1992.

〈판결요지〉 이사회 규칙17의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기업들에게
정보(information)의 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은 위원회의 권한행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法律的 내지는 事實的인 資料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제출된 情報의 證明力(provative value)과 그러한 정보가
정보제공기업들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체법과 규칙17에 규정되어 있다. 규칙 17에 따라서 제출된 정보
가 유럽공동체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의하여 규칙 17과는 무관한 절
차에까지 이용된다고 하면 정보제공기업의 抗辯權(the rights of
defence)과 위원회의 職務上 秘密維持義務(obligation of profes-
sional secrecy)은 침해되고 위반되는 결과로 될 것이다.

- Vereniging Van Samenwerende Prijsregelende Organisaties In De Bouwnijverheid(SPO) v. E.C. Commission CFI, T-29/92R, July 16, 1992.

SPO는 질서있는 競爭의 促進과 監督, 가격입찰에서의 不當行爲防止,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價格形成의 장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업협회이다.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합리적인 가격의 결정등에 관한 SPO규칙들이 EEC 제85조(1)이 禁止하고 있는 경쟁제한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는 위원회결정의 效力發生을 停止시키기위한 假措置를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공동체법원은 SPO규칙들이 경쟁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同규칙을이 관련산업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原告가 입을 수 있는 심각하고도 치유할 수 없는 損失을 막는데 필요한 정도까지 문제된 위원회 決定의 執行에 대한 부분적인 停止를 명하였다.

- Publishers' Association v. E.C.Commission CFI, T-66/89, July 9, 1992.

출판업협회는 EEC제85조(1)의 違反을 근거로 同 협회의 會員社間에 체결된 協約을 終了시키기 위한 措置를 취하도록 요구한 위원회 결정(89/44/EEC)의 無效請求를 하였다. 同 협약은 고정된 가격으로 도서판매의 基準條件을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회원국간의 圖書貿易에도 적용되었다. 출판업협회는 문제의 協定이 회원국간의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無效를 청구한 것이다.

〈판결요지〉 공동체시장내에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賣買의 統一的條件을 부과하는 출판업협회의 규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근거에서 출판업자협회의 위원회 결정(89/44/EEC)에 대한 無效申請은 기각되었다.

〈유럽공동체기구〉

- 유럽법원 - Meilicke(Wienand) v. ADV/ORGA F.A.Meyer AG European Ct.J., C-83/91, July 16, 1992.

Hannover地方法院은 公用企業(public liability companies)의 설립과 同 기업의 資本의 변경과 유지에 관한 두번째 이사회지침(77/91/EEC)의 解釋에 관한 여러 문제의 先決的 判決을 부탁하였다.

〈판결요지〉 만약 공동체법원이 의뢰된 문제에 대하여 判決을 내리는데 필요한 事實 및 法律的 要素를 충분히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判決을 내리는 것은 공동체법원 자신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Hannover地方法院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법원은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

- 유럽의회 - European Parliament v. E.C. Council European Ct.J., C-65/91, July 16, 1992.

유럽의회는 共同體立法過程에의 參與權이 侵害되었다는 이유로 이사회 규칙(4059/89)의 無效를 청구하였다. 이사회의 同 규칙은 채택에 앞서 유럽의회의 2次協議를 거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사회가 위원회의 草案(initial proposal)과는 상당히 상이한 이사회 규칙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조약 제7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유럽의회와의 2次協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유럽의회가 유럽공동체조약(Treaty of Rome) 제75조에 규정된 立法節次에서 2次協議를 요구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節次要件의 違反이며 따라서 이사회 규칙4059/89는 無效이다. 그러나 무효화된 規則의 效力은 의회의 정식협의 절차를 거쳐 당해 문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이사회가 채택하기까지 연장된다.

〈환경〉

- E.C. Commission v. Belgium, European Ct. J., C-2/90, July 9, 1992.

벨기에의 Wallonia지역당국은 자신의 관할지역내에 다른 회원국에서 나온 쓰레기의 매장 및 하치를 금지하였는데, Wallonia지역당국의 그러한 금지조치는 EC내의 유해한 쓰레기의 國境通過船積(transfrontier shipment)의 統制와 監督에 관한 지침(84/631)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판결요지〉 쓰레기는 재생가능여부와 상관없이 일종의 生產物로 취급되어야 하고, 條約 제30조에 따라 쓰레기의 자유로운 運搬은 原則적으로 制限될 수 없다. 그러나 쓰레기가 일반공중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기 이전에도, 특정지역의 한정된 收用能力을 초과하여 그러한 쓰레기가 축적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된 지역의 쓰레기 수용능력과 쓰레기의 성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유럽공동체조약 제130r(2)조는 環境侵害要因은 그 요인 발생지에서 원칙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環境保護에 관한 1989년 바즐협약(the Basle Convention)이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自體解決의 原則과도 부합되는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서 와 같이 수입된 쓰레기와 관할지역 자체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차이가 있고 쓰레기를 배출 수출한 지역과의 지리적 거리를 고여하여 보면, 본건의 문제된 禁止處分은 결코 차별적인 조치라고 볼 여지가 없다.

〈어업〉

- Portugal and Spain v. E.C.Council, European Ct.J., C-63/90, 67/90, 70/90, 71/90, 73/90, October 20, 1992.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린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Paroe섬 近海에서의 漁獲쿼터를 정한 EC조치의 無效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C의 同 조치는 1983년에 취해진 이후改正되지 않았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에 EC에 加入했기 때문에 쿠타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판결요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共同體加入法에는 가입당시의

EC법규 개정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效力を 갖는 EC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적용된다. 따라서 1983년의 쿼터 할당은 유효하다.

〈상품의 자유이동〉

- Simba S.p.A.; Comafrika S.p.A.; Camar Srl; Co-Frutta S.p.A. & Chiquita Italia v. Italian Ministry of Finance, European Ct. J., C-228-234/90, 333/90, 353/90, June 9, 1992.

유럽공동체 회원국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直輸入된 바나나에 대하여 이탈리아가 소비세를 부과하자 바나나수입자들이 소비세부과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이탈리아政府의 소비세부과는 공동체법에 반한다. 內國稅가 공동체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同 세금을 납부할 필요없다.

- Generics(U.K.) & Harris Pharmaceuticals v. Smith Kline & French Laboratories, European Ct. J., C-191/90, November 3, 1992.

영국 特許法은 특허발명의 強制實施許諾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영국내에서 특허발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영국이외의 다른 유럽공동체회원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特許發明製品이 영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強制許諾은 인정되지 않는 반하여, 영국이외의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하도록 하는 強制許諾이 인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국 특허법 규정과 그 운영이 유럽공동체조약의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판결요지〉 수입허락여부에 관한 영국 特許法의 基準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제3국으로부터

의 수입허락여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럽공동체 회원국 사이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 특허법은 영국 특허권자가 영국이외의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하여 영국으로 수입하기보다는 영국내에서 특허발명제품을 생산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국 特許法 規定은 차별적인 규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Etablissements Delhaize Freres & Compagnie le Lion S.A., v. Promalvin S.A. & Age Bodegas Unidas S.A. European Ct. J., C-47/90, June 9, 1992.

〈판결요지〉 포도주의 비포장수출에 쿼터를 정한 스페인법규는 수출에 있어서의 數量的 制限을 금지하고 있는 EEC 제34조를 違反하였다. 비포장상태로 다른 회원국에 수출될 수 있는 포도주의 數量을 제한하면서 생산지역내에 존재하는 기업간의 동일한 방식의 포도주賣買에 대하여는 수량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스페인법은 비포장상태에서의 포도주수출을 특히 制限하는 效果를 가지며, 생산지역내의 포도주를 병에 나누어 담아 포장하는(bottling) 회사에 特惠를 주는 것이다. 이사회규칙(823/87)하에서 포도주생산회원국은 공정하고 전통적인 慣行을 고려하여 이사회규칙에 의해 규정된 조건보다 추가적이거나 엄격한 유형의 포도주運搬條件을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은 회원국에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條約上의 規定에 反하는 條件을 부과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E.C. Commission v. Greece, European Ct.J., C-137/91, June 24, 1992.

위원회는 위원회가 요구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국내의 기업들에게 全製造過程中 최소한 35%의 부가가치가 그리이스내에서 이루어진 전자식금전등록기만을 購買토록 요구한 그리이스는 條約上의 義務를 違反했다는 確認判決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그리이스는 EEC조약 제5조와 제30조를 위반하였다.

- Commission v. Italy, Greece and France, European Ct.J., C-95/89, 293/89, 344/90, July 16, 1992.

공동체 위원회는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가 다른 회원국에서는合法的으로 生產 · 販賣되고 있는 제조과정에서 질산염이 첨가된 치즈(과학적 견지에서 국제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의 輸入을 禁止함으로써 EEC조약 제30조의 義務를 違反하였다는 確認判決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만일 회원국이 國內許容添加劑目錄에 포함된 첨가제를 무역업자가 첨가하는 것을 許容하는 節次를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회원국이 일정한 물질을 허용첨가제목록에 포함시켜 달라는 要求를 부당하게 拒絕하였다면, 회원국은 EEC조약 제30조 및 제36조상의 첨가제분야에 있어서의 義務不履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화학첨가제에 관한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의 법률은 허용되지 않은 화학첨가제를 禁止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 판매되는 輸入食料品에 첨가되는 화학첨가제에 적용되는 制度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청구는 기각한다.

- 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v. Legros European Ct.J., C-163/90, July 16, 1992.

〈판결요지〉 회원국의 특정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이유로 地域境界에서 부과되는 요금(charge)은 회원국의 全域으로의 물품반입을 이유로 하여 國境에서 부과되는 關稅만큼 물품의 자유이동에 대해 심각한 障碍가 된다. 이로인해 共同體關稅地域의 統一性에 대한 심각한 파괴위험이 초래되었고 그러한 위험은 지역경계에서 부과되는 요금이 문제된 회원국의 영토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도 적용된다 는 사실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이사회 규칙(2838/72)에 부속된 공동체와 스웨덴 사이에 체결된 協定의 제6조는 회원국의 특정지역으로의 물품의 반입을 이유로 스웨덴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물품의 關稅價値(customs value)에 비례하여 회원국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Belgium v. Societe Cooperative Belovo, European Ct.J., C-187/91, July 16, 1992.

B는 벨지움당국에게 非會員國으로부터의 계란수입에 따른 輸入稅先納畢證을 요구하여 受領하였다. 그러나 벨지움당국은 현행의 공동체법이 그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B에게 발급된 證明書의 返納을 要請하였고 B가 실제 수입을 한 시기의 算定價額 보다 낮은 輸入關稅를 納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당국은 差額의 納附를 요구하였다. B는 자신이 善意에 따라 행동했으며 당해 증명서의 잘못된 발급에 따른 責任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輸入許可證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先納畢證制度에 적용되는 공통의 세부규칙에 관한 위원회 규칙(3719/88)의 제24조와 제25조는 (증명서)발급당국에 대하여 國內法에 따라 발생한 損害에 대한 합리적 措置施行을 금지하지 않는다. 증명서 발급 이후의 輸入稅 일부에 대한 還收措置는 증명서 발급 이후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환급에 관한 위원회규칙(1697/79) 제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 Vereniging Veronica Omroep Organisatie v. Commissariat voor de media, European Ct.J., C-148/91, Feb. 3. 1993.

네덜란드 법원은 Veronica방송사가 1987년 네덜란드 放送法(media law)을 違反하였음을 발견하고 로마 條約의 규정(자본의 자유로운 이전과 국경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에 대한 제한의 금지)과 放送法(國內認可 放送社의 外國放送社에 대한 投資, 設立 또는 經營에의 參與 등에 대한 권리의 제한)의 一致與否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럽법원(ECJ)에 로마조약의 同 規定을 解釋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당국은 네덜란드로의 送信計劃을 갖고있는 룩셈부르그 내의 商業的 放送社의 설립에 참여하고 실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法을 위반한 Veronica放送社를 고소하였다. 즉 방송당국은, 첫째 Veronica放送社의 경영진은 새로운 放送社(RTL-Veronica)의 설

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둘째 Veronica방송사는 RTL-Veronica의 당좌계정에 대해 은행보증을 제공하였다. 세째 Veronica방송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RTL-Veronica의 소수 지분(stake)을 갖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自社에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세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訴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유럽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資本移動과 서비스에 관한 條約規定들은 會員國의 영토내에 설립된 방송사들이 Veronica放送社가 被訴되었던 것과 같은 유형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國內的 放送規制를 許容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법원은 첫째, 네덜란드 방송법규와 관련된 최근의 判例法(case law)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유럽법원은 공동체법이 네덜란드 방송법내에서 이행되는 目標들, 즉 다원론자 및 비상업적 방송매체 그리고 문화적 정책에 의하여 추구되고 있는 목표들을 合法的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둘째, 國內法을回避할 목적으로 국내법에 적용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條約上 權利에 依存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회원국이 제정한 國內法이 效力이 있음을 인정한 이전의 判例法을 언급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법원은 放送社가 국내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네덜란드放送法은 效力이 있다고 있다고 判決하였다.

〈사람의 자유이동〉

- Office National des Pensions(ONP) v. Di Crescenzo, European Ct. J., C-90/91 and 91/91, June 11, 1992.

〈판결요지〉 공동체내에 거주하는 피고용인이나 자영업자 및 그들 가족에 대한 社會保障의 適用範圍에 관한 이사회규칙(1408/71)의 46조와 1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각국의 國內法에 근거한 保險給與의 決定을 위해 관계당국은 중복된 (overlapping) 보험료에 대하여 국내법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共同體法에 근거한 保險給與를 決定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규칙 제12조(2)항에 의거한 중복된 보험료에 대하여 국내법규정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때에는 규칙 제46조(3)에 따라 保險給與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이상과 같이 산정된 保險給與의 최고금액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 Belgium v. Taghavi, European Ct.J., C-243/91, July 8, 1992.

〈판결요지〉 공동체내에서 이동하는 피고용인, 자영업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社會保障計劃의 적용에 관한 이사회규칙(1408/71)의 제2조와 제3조는 규칙(2001/83)에 의해 改正 및 補完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즉 위의 조항들은 노동자의 가족구성원이라는 身分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個人的 權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비회원국의 국민이나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노동자의 배우자가 국내법이 부여한 장애자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위의 조항들을 원용할 수 없다. 노동자의 가족구성원은 규칙(1408/71)하에서 주어진 권리,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身分範圍內에서 취득한 權利에 대하여만 권한이 있다. 문제된 장애자에 대한 保險給與는 관련자가 노동자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닌 개인적 권리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벨기에 노동자의 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배우자는 문제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Knoch v. Bundesanstalt fr Arbeit, European Ct. J., C-102/91, July 8, 1992.

〈판결요지〉 현재 완전실업상태인 피고용인은 그에게 管轄權을行使했던 회원국의 당국으로부터 失業保險給與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거나 복귀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규칙(1408/71)의 7조(1)항(b)(ii)에 명시된 실업보험급여에 대한 權利를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居住國의 법률하에서 保險金受領의 中止가 있었던 경우, 회원국의 관계당국은 실직자에게 관할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가에서 그가 이미 받은 보험금을 그가 받을 保險

給與에서 控除하여야 한다. 실업자가 이전의 국가의 법제하에서 실업 보험금을 받았던 기간은 거주국 법률하에서 취득한 失業保險給與에 대한 權利存續期間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European Parliament v. E.C.Council, European Ct. J., C-295/90, July 7, 1992.

〈판결요지〉 國籍에 근거한 差別을 禁止하는 EEC 제128조에 따른 이른바 직업훈련에 관한 조약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관한 지침이 EEC 제235조를 法的根據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지침이 학생들에게 이주근로자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自由移轉權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居住權을 벗어난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지침의 目的과 內容은 결과적으로 조약 제7조의 범위와 그 법률적 근거로서의 EEC 제235조의 範圍를 벗어난 것이다. 위원회가 EEC조약의 제7조의 2에 따라 문제된 지침을 採擇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고 해서 EEC 제235조에 근거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Hughes v. Chief Adjudication Officer, European Ct.J., C-78/91, July 16, 1992.

〈판결요지〉 가족에게 지급되는 非納入性 週間現金給與金으로써 家計貸付(family credit)는 저임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자녀들로 인한 지출을 보충해주는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가계대부와 같은 급여금이 규칙(1408/71)의 제1조(u)(i)에 정의된 가족급여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두번째 기능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同 규칙의 제4조(l)(h)에 언급된 위험(risk)와 관련이 있다. 급여금의 지급이 납부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은 이를 社會保障給與金으로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자의 배우자는 그가 규칙(1408/71)의 제7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의 가족구성원이고 국내법 하에서 문제된 가족급여금이 그 가족구성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家族給與에 대한 權利를 청구할 수 있다.

〈설립의 자유〉

- E.C.Commission v. Luxembourg, European Ct. J., C-351/90, June 16, 1992.

〈판결요지〉 룩셈부르크는 EEC법 제48조와 52조에 의한 共同體의義務를 違反하였다. 지속적인 의료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룩셈부르크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單一診療規則(single-surgery rule: 동일 醫師에 의한 계속적인 진료규칙)은 룩셈부르크에서開業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同 규칙의 적용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보다 다른 회원국에서 개업하고 있는 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비록 규칙완화가 특별한 경우에 행정상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할지라도, EEC 제48조와 제52조에 의하여 규정된 平等待遇(equality of treatment) 原則의遵守가 國家機關의 일방적 意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 Micheletti v. Delegacion Del Gobierno en Cantabria, European Ct. J., C-369/90, July 7, 1992.

스페인 당국은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의 二重國籍을 갖고 있는 M에게 공동체국민으로서의 身分證發給을 拒否하였다. 이러한 거부는 스페인 民法 제9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판결요지〉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관한 공동체법은 非會員國의 國籍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다른 會員國의 國民을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host state)의 법률이 그를 비회원국의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이유에서 설립의 자유에 관한 權利를 否認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비록 國際法에 따라 國籍의 取得과 壓失을 규율하는 要件의 정의는 각 회원국의 權限範圍內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권한은 共同體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 R. v. Immigration Appeal Tribunal and Singh(Surinder),

ex p.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uropean Ct. J., C-370/90, June 7, 1992.

인디아인인 S는 독일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1982년 영국인과 결혼하여 사업목적으로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영국인 부인과 이혼하게 되자 영국정부는 그에게 부여했던 居住許可를 取消하고 追放命令을 내렸다. S는 영국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체법에 의한 居住權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공동체내에서의 居住 및 移轉의 制限廢止에 관한 EEC 제52조와 지침(72/148)은 회원국이 자국민의 배우자에게도 國籍에 상관없이 그 영토내에 移住 또는 居住許可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배우자의 한사람이 다른 회원국에서 들어오거나 거주한다면, 공동체법하에서 그의 배우자도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EEC 48조에 따라 피고용인으로서 일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떠났다가 國籍國인 회원국영토내에서 자영업자로서 정착하고자 돌아온 회원국의 국민은 제52조에 근거한 규칙(1612/68), 지침(68/360) 또는 지침(73/148)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조건하에서 비회원국 국민인 그의 배우자를 자국의 영토에 동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회원국의 국민은 그의 국적에 수반된 권리가 아니라 共同體法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權利에 힘입어 그 국가의 영역내에 들어가거나 거주할 수 있다.

○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Laderer, European Ct.J., C-147/91, June 25, 1992.

스페인 국민인 L은 스페인의 職業資格을 取得함이 없이 스페인내에서 不動產仲介業을 하다 拘束되었다. 그는 구속이 공동체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로운 移轉의 權利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자영업자의 이전의 자유와 서비스제공의 자유에 관련된 지침(67/43)은 不動產仲介業者로서 적절한 資格을 갖춘 자에 대해 國內立法으로 일정한 활동을 정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條約規定은 전적으로 회원국의 국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 E.C.Commission v. Greece, European Ct. J., C-65/91, October 20, 1992.

〈판결요지〉 그리스는 수입과 관련된 E.C.輸入規則上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위원회가 그리스에게 스웨덴제 성냥의 수입에 대하여 國內的인 監視措置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가했더라도, 그것이 스웨덴제 성냥에 대한 수량적 제한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리스는 위원회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지 못함으로써 EC법의 義務를 違反하였다.

〈관할권〉

- Jakob Handte GmbH v. Traitements Mecano-Chimiques des Surfaces, European Ct. J., C-26/91, June 17, 1992.

TMCS는 B로부터 HG社에 의해 제작되고 HF社에 의해 판매된 금속광택기계를 구입하였다. 이 장비는 작업장에서의 保健과 安全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았고 購買目的에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TMCS는 B와 HG社 그리고 HG社를 상대로 프랑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브루셀협약 제5조(1)에 근거하여 프랑스와 독일의 두회사 모두에 대하여 管轄權이 있다고 하였으나 HG社는 同協約이 연쇄계약(chain of contrac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제품의 2차 구매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협약 제5조(1)항의 特別管轄權에 관한 原則의 적용은 제조업자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法的 安定性의 원칙에 違背된다. 2차 구매자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제조업자는 신분과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구매자에 대하여 契約上의 義務를 지지않는다고 추정되며 대부분의 계약단계에서 판매한 생산품의 瑕疵에 대한 제조업자의 責任은 非契約的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성차별〉

- R. v.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curity, ex p.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uropean Ct. J., C-9/91, July 7, 1992.

〈판결요지〉 社會保障에 있어서 男女平等待遇原則의 점진적 이행에 관한 이사회지침(79/7)의 제7조(1)항은 性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 고령 및 퇴직연금의 法定收惠年齡의 決定과 이에 따른 差別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행의 점진적인 성격은 제7조(1)(a)의 규정과 정확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여러 완화규정(derogation)에 명백하게 반영되어 있다. 비록 지침의 前文이 완화규정의 制定趣旨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共同體立法府가 제7조(1)에 포함시킨 예외 - 퇴직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부여된 혜택을 잠정적으로 회원국이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 의 성질로부터 취지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男女에 대해 상이한 연금수혜연령은 社會保險의 保險料納入期間과 관련된 不平等이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

〈제6부과가치세지침〉

- E.C.Commission v. Spain, European Ct. J., C-96/91, June 9, 1992.

〈판결요지〉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위해 공식적인 樣式에 합치되는 특별한 書式의 使用을 요구하는 스페인법규는 공동체법을違反한 것이다. 지침(69/169)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내에서 회원국은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制限的 權利만을 保有한다. 지침(69/169)의 제6조(4)항은 부가가치세의 還給을 신청하는 여행자에게 송장(Invoice)사본의 제출과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다른 서류의 제출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이 특별한 송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國家權利의 行使의 제한을 허용하는 選擇權을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특별한 송장의 요구는 문제된 조항이 명백하게 피하려고 하는 목적에 반하며, 세금징수의 감독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免除權의 行使를 극히 곤란케하고 二重課稅를 초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사회보장〉

- Jackson v. Chief Adjudication Officer, European Ct.J., C-63/91 and 64/91, July 16, 1992.

영국에서 수입이 부족한 자에게 생계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紿與金(benefit)의 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모비용은 급여금 수혜자의 소득총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分爭이 있고, 이러한 분쟁에서 보모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社會保障에 있어서의 平等에 관한 指針(79/7)”과 “平等待遇에 관한 指針(76/207)”을 주장근거로 들고 있어서, 문제된 급여금이 동지침들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가에 관하여 유럽공동체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되었다. 문제된 급여금이 “社會保障에 있어서의 平等에 관한 指針”的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급여금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지침 제3조(1)에 열거된 “危險으로부터의 保護”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판결요지〉 영국에서의 문제된 급여금제도와 같이 법정한도 미만의 소득만을 가진 자에게 생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급여금을 지급하는 法制는 그러한 “危險으로부터의 保護”와 관련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국가원조〉

- Spain v. E.C. Commission, European Ct. J., C-312/90, June 30, 1992.; Italy v. E.C. Commission, European Ct. J., C-47/91, June 30, 1992.

스페인과 이탈리아정부는 自國의 私企業에게 부여한 원조와 관련해서 EEC제93조(2)에 근거한 節次를 開始하려는 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EEC제173조의 규정에 의해 係爭가능한 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許容不可(inadmissibility)의 반대입장을 밝혔다.

〈판결요지〉 許容不可의 반대를 기각한다.

〈세 제〉

- Weber Haus Gmbh & Co. KG v. Finazamt Freiburg Land, European Ct. J., C-49/91, October 20, 1992.

동일한 大株主를 갖는 두 독일회사는 한 회사의 이익(profit)을 다른 회사에 移轉하기로 합의하였다. 독일의 지방세무서는 이를 단순한 회사내 이전이 아닌 이익을 讓渡받는 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변제(payment)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让渡稅(transfer tax)를 청구하였다. 이에 동일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두 회사간의 利益讓渡에 課稅가 가능한가에 대한 先決的 判決이 부탁되었다.

〈판결요지〉 회사의 수권자본이 증가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자본을 증가시킨 양도는 資本稅(capital taxes)의 課稅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익을 양도받은 회사가 이익을 양도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利益讓渡는 配當金支給으로 간주되고, 資本稅納付義務는 없다.

- Commerz-Credit Bank AG-Europartner v. Finanzamt Saarbcken, European Ct. J., C-59/91.

EC의 법규는 支店(branch)의 移轉에 단지 0.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세무당국은 본사로 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 구별되지도 않는 支店에 대한 너무 낮은 稅率로 보고 EEC제 177조에 근거한 先決的 判決을 청구했다.

〈판결요지〉 0.5%稅率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支店은 충분한 資產과 특정활동을 수행할 職員을 구비하여야 한다.

- Dias v. Director Da Alfandega Do Porto, European Ct.J., C-343/90, July 16, 1992.

Oporto 관세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포르투갈로 수입되거나 포르투갈에서 조립 또는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표시사항변경에

적용되는 稅金의 納附 없이, 수입된 자동차의 기술적 표시사항을 변경한 사실을 근거로 P에게 脱稅에 대한 追徵金을 부과하여 EEC조약과 이 세금의 兩立可能性이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1) 일정한 범주의 생산품에 대한 差別的待遇의 可能性은, 다른 범주의 생산품에 대해 國內稅制가 非差別的으로 適用된다면 공동체법과 양립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즉, 일정생산품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이 반드시 전체 財政體制를 공동체법과 양립불가능하도록하지 않는다. (2)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내생산품이 극도로 적기 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輸入品에 적용되는 稅金(Charge)이 생산품의 原產地와 무관하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생산품에 체계적으로 적용되는一般的 國內稅制의 일부라면 EEC조약 제9조와 12조가 의미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通關關稅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제95조의 의미에 해당되는 國內稅에 해당된다.

〈운송〉

- Licensing Authority South Eastern Traffic Area v. British Gas, European Ct.J., C- 116/91, June 25, 1992.

BG는 회전속도계(tachograph)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사용을 違法行爲로 규정한 1968년 運送法을 위반하여 기소당했다. BG는 공동체법하에서 문제된 자동차는 회전속도계의 裝着要件을 면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육로운송에 관한 특정한 社會的 法制의 調和에 관한 규칙(3820/85)의 제6조(4)와 육로운송에서의 記錄裝置에 관한 규칙(3821/85)의 제3조(1)하에서 가스서비스와 관련된 자동차에 대한 회전속도계의 장착 및 使用要件緩和는 관련시점에 전체적이고 배타적으로 가스의 생산, 운반 또는 배달 등에 사용된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완화는 관련시점에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국내적인 가스기구의 운반에 이용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 E.C. Commission v. Germany, European Ct. J., C-74/91, November 3, 1992.

EC위원회는 독일의 법규가 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함으로써 EC법상의義務를 移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독일은 공동체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행사에게 附加價值稅를 免除한 독일의 법규는 EC법의 규정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無效이다.

- "K" Line Air Service Europe B.V. v. Eulaerts N.V. And Belgium, European Ct.J., C-131/91, July 9, 1992.

K는 E에게 중고차를 賣買하면서 합의된 價格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代金請求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벨지움의 관계법규에 따라, 부과가치세는 중고차에 대한 최소평가기준액(minimum basis of assessment)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K에게 합의된 가격과 최소평가기준액간의 차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의 追加納入을 요구하였다. K는 우선 추가납입을 하고 E에게 추가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는 최소평가기준액의 운용은 부가가치세 제6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支給을 拒絕하였다.

〈판결요지〉 특정유형의 脫稅를 防止하기 위한 국내법규는 원칙적으로 제6지침의 제11조에 규정된 附加價值稅賦課를 위한 기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사건의 문제된 법규는 絶對的이고 一般的인 性格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法規로 부터의 이탈이며 이러한 이유로는 제6지침의 제27조에 의해 許容되는例外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원회 제6지침은 國內立法이 課稅可能者간의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해서 同 지침의 제11조에 규정된 것과 상이한 부가가치세를 위한 최소평가기준액을 규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II. 러시아·동구의 입법동향

1. 러시아 입법동향

〈산업·경제〉

- 消費者의 權利保護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1992.1.7.)
 - 소비자, 생산자, 역무제공자, 판매자 등의 기초적 개념과 소비자와 기업가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 및 적절한 수준의 상품구매,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이익의 국가적·공공적 보호, 공공소비자단체의 조직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에너지자원 기타 생산품 및 서비스의 價格에 관한 國家規則에 대한 러시아聯邦政府의 規則(REGUL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SEPTEMBER 17, 1992, No. 724, C. OF MOSCOW, ON STATE REGULATION OF PRICES FOR ENERGY RESOURCES, OTHER KINDS OF PRODUCTS AND SERVICES. 1992.9.17.)
 -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089호 '개개의 에너지자원 가격에 관한 국가규칙'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정부각부처별 에너지관련 업무의 분장에 관해 규정함
- 러시아聯邦 暫定關稅에 관한 大統領令(DECREE OF THE PRESIDENT OF RUSSIAN FEDERATION ON INTERIM

CUSTOMS TARIFF OF THE RUSSIAN FEDERATION.
1992.6.14)

- 러시아연방으로 수입되는 최혜국대우를 받는 국가 및 그외의 국가의 물품에 대한 잠정관세율을 정하고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함

○ 상표,서비스마크 및 상품의 原產地名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TH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NAMES OF PLACES OF GOODS' ORIGIN.1992.5.14.)

- 제1장 상표 및 서비스마크의 법적보호, 제2장 상표등의 등록, 제3장 회사마크, 제4장 상표의 사용, 제5장 상표의 이전, 제6장 상표의 법적보호의 정지, 제7장 상품의 원산지명과 법적보호, 제8장 등록과 상품의 원산지명사용을 위한 권리부여, 제9장 상품의 원산지명사용, 제10장 상품의 원산지명사용에 대한 법적보호의 종료 등 본문 48개조로 구성됨.

○ 상표,서비스마크 및 상품의 原產地名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의 施行에 관한 러시아聯邦最高會議의 規則(REGULATION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IMPLEMENTATION ON TH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NAMES OF PLACES OF GOODS' ORIGIN".1992.5.14.)

- 舊소련에서 행해진 상표및 서비스마크의 등록은 러시아연방에서도 계속 유효하고 등록수수료는 러시아연방 특허청의 예산으로 편성됨을 규정함.

○ 경제에 있어 지불청산을 개선하고 기업소재공화국에 대한 企業의 責任強化를 위한 緊急措置(ON URGENT MEASURES TO IM-

PROVE PAYMENT SETTLEMENTS IN THE ECONOMY
AND ENHANCE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FOR THEIR STATE. 1992.5.25.)

- 국가기업의 지급위기를 완화하고 재정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경제부, 재무부 및 중앙은행등이 시행할 조치를 규정함.

○ 러시아연방에서 債權證書制度의 施行에 관한 大統領令(RUSSIAN FEDERATION PRESIDENT'S DECREE ON IMPLEMENTATION OF VOUCHER SYSTEM IN THE RUSSIAN FEDERATION. 1992.8.14. No.914)

- 러시아국민에 대한 공공재산의 이전 및 광범위한 대중의 사유화절차 촉진이라는 목적수행과 기업의 공공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한 사유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증서(VOUCHER)의 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聯邦 및 市有企業의 私有化過程에 있어 證券市場設立措置에 관한 러시아聯邦大統領令(DECREE OF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MEASURES TO ESTABLISH A SECURITIES MARKET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FEDERAL AND MUNICIPAL ENTERPRISES. 1992.10.7. No.1186)

- 채권증서의 유통단계준비와 연방 및 시유기업의 사유화과정에서 증권에 투자된 공공기금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기금의 조성, 운용 및 증권시장의 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外國人法人的 이득세 및 소득세에 관한 러시아聯邦國稅廳의 指針(STATE TAXATION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27, 1992, INSTRUCTIONS ON TAXA-

TION OF PROFITS AND INCOMES OF FOREIGN JURIDICAL ENTITIES.1992.5.27.)

- 기업(Enterprises) 및 조직(Organizations)의 이득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과 러시아연방에 있어 과세의 기초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에 따라 러시아내의 외국인법인의 이득 및 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를 규정함.

〈법원·법무〉

- '質權'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에 대한 러시아聯邦最高會議 規則 (REGULATION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TEXT OF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PLEDGE", 1992.5.29.)

- '질권'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개정안을 공포하고 동법의 이행절차 및 효력발생일을 연방최고회의 규칙에 따르도록 함.

- 質權에 관한 러시아聯邦法律(RUSSIAN FEDERATION LAW ON PLEDGE, 1992.5.29.)

- 제1부 총칙, 제2부 질물제공자소유의 재산에 대한 질권, 제3부 질권자에게 양도된 질물에 대한 질권, 제4부 권리질권 등을 내용으로 함.

- * 참고자료: NEW TIMES(MOSCOW, RUSSIA), 1992. 10~12월호

2. 헝가리입법동향

〈사회·문화·교육〉

- 노동자의 部分所有制計劃에 관한 1992년 法律 제44호(Act XLIV

of 1992 on the Employee's Part-Ownership Programme)

- 총칙, 노동자부분소유제계획(EPP)기구의 구성 및 기능, 기능의 정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산업·경제〉

○ 通貨流通에 관한 형가리 국립은행총재령 (Decree of the Governor of the National Bank of Hungary No.3/1992(MK 34.) MNB on Money Circulation)

- 총칙, 은행계정업무(처리)의 등록, 변제의 기한, 지급의 방법, 은행계정간의 결제, 대체, 현금추심명령, 장래의 현금추심명령, 즉시 현금추심명령, 계획에 의한 지급, 신용장, 수표, 은행카드, 현금지급과 현금차입, 은행계정에 대한 현금지불, 우편을 통한 은행계정으로 부터의 현금지급, 금융예금구좌, 지급이행명령, 금융과 관련된 정보의 발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通貨流通業務修行에 관한 세부규칙(DETAILED RULE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MONEY CIRCULATION TRANSACTIONS):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1호

- 은행계정간의 결제방법, 수표의 제시와 현금화, 문양, 보증, 은행카드, 현금의 지급과 현금공급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通貨流通書式의 記載와 利用에 관한 규칙(RULES OF THE USE AND THE FILLING IN OF THE FORMS OF MONEY CIRCULATION):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2호

- 은행계정간의 결제, 수표, 현금지불과 현금공급, 지급에 관한 특별규칙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通貨流通의 細部事項表에 관한 규칙(RULES DEFINING THE INDICATION DETAILS OF MONEY CIRCULATION): 국

립은행총재령 부칙 제3호

- 通貨流通의 細部事項表 코드체계(CODE SYSTEM OF THE INDICATION DETAILS OF MONEY CIRCULATION)
 - 현금유통의 法的 權原(LEGAL TITLES OF CASH CIRCULATION)
 - 결제회전의 法的 權原(LEGAL TITLES OF SETTLEMENT CIRCULATION)
 - 通貨流通細部事項表의 內容(THE CONTENT OF THE INDICATION DETAILS OF MONEY CIRCULATION)
- ◆ 현금유통에 관한 情報의 公開(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ASH CIRCULATION):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4호
- ◆ 은행계정과 관련된 情報의 公開(DISCLOSURE OF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BANK ACCOUNTS): 국립은행총재령 부칙 제5호

○ 영구히 國家所有로 남는 企業資產의 管理와 利用에 관한 1992년 法律 제53호(Act LIII of 1992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Entrepreneurial Assets Permanently Remaining in State Ownership)

- 영구히 국가 소유로 남는 기업자산의 범위, 주식회사의 국가자산관리, 국가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설립, 업무의 범위 및 기구, 국가자산관리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재산의 처분, 경제단체(회사)의 설립, 국가재산운영의 특별형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참고자료: HUNGARIAN RULES OF LAW IN FORCE (BUDAPEST, HUNGARY), 1992. 10~11월호, 1993. 1월호.

III. 중국입법동향*

〈외교·국방〉

- 越南과 投資保障協定, 經濟技術協力協定, 科學技術協力協定 및 文化協定 (1992년 12월 2일) (1992년 12월 3일 人民日報)

〈산업·경제〉

- 株式制度試行企業人事管理暫定辦法 (1992년 9월 17일)

- 株式制度試行企業의 인사관리는 국가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공개적·민주적·경쟁적 방식에 의하여 선발하여야 한다(1992년 12월 5일 法制日報 및 人民日報).

- 株式制度試行企業物資購入販賣管理에 관한 暫定規定 (1992년 12월 2일)

- 物資部, 국가체제개혁위원회는 株式制度試行企業物資購入販賣管理에 관한 暫定規定을 작성하였다. 暫定規定은 국가지령성 계획산품을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주식제도를 試行한 후에도, 계속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지령성계획분배물자 또는 국가계약판매물자는 물자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관분배기관이 안배할 책임을 지되, 계획분배공급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명확한 물자분배공급기준이 없으면 물자분배기관이 지정한 물자기업이 계획에 따른 공급할 책임을 진다. 주식제 시행기업이 생산하는 국가지령성계획 밖의 산품과 필요한 물자는 당해 기업이 자주적으로 판매·구입한다. (人民日報, 92년 12월 3일).

* 中國에서 法令명칭의 일부는 그 법체계내의 위치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辦法과 條例의 制度主體는 국무원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그 명칭만으로는 우리나라 법체계내의 法律, 命令, 規則 또는 條例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原語 그대로 실기로 한다.

○ 企業財務通則 및 企業會計準則 (1992년 12월 3일)

- 1992년 12월 3일 중국의 재무관리제도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평가되는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이 공포되어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부장이 설명에 따르면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채택강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대외개방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원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제1조). 「기업재무통칙」은 중국내의 모든 기업에게 다시 말해서 외자계기업에도 적용되는 법이다. 기업재무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건실한 재무관리를 위한 기업내부재무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기업의 재무상황을 실제대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제5조).

또한 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정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투자주체에 따라 국가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자본금 및 외국투자가(外商)자본금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특히 무형자산을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자금조달, 유동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 대외투자, 元本과 이자, 영업수입·이윤 및 그 분배·외화계정, 기업청산, 재무보고서 및 재산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1992년 12월 6일 法制日報).

○ 會社法(草案)

- 회사법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93년 2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회의에 회사법초안을 제출하였다.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 大耀武는 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촉진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979년 중

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온 이후 회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회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회사법초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의 설립 조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설립에 필수적인 출자인 또는 발기인, 등록자본, 회사정관의 작업 등 여러가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회사가 된다. 초안은 유한회사(유한책임공사), 주식회사(股份유한공사) 설립에는 반드시 회사법에 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회사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도 초안은 회사의 내부조직, 주식의 발행거래 회사의 재무회계관리, 회사의 합병분할해산과 청산, 외국회사의 지사, 법적책임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1993년 2월 16일 法制日報).

○ 中外合資合作經營企業會計辦法 (1993년 1월 12일) (1993년 2월 12일 法制日報)

○ 貯蓄管理條例 (1992년 12월 11일)

- 저축관리조례는 1992년 1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7호로 공포되었으며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시행과 동시에 1980년 5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中國人民銀行 貯蓄章程」은 폐지된다.

○ 中華人民共和國稅關의 出入國旅客의 物品申告에 관한 規定 및 中華人民共和國稅關의 出入國旅客의 “紅綠通路”選擇通關規定 (1992년 11월 20일) (1992년 12월 18일 法制日報)

○ 中華人民共和國 商標法改正案 및 農業技術維持擴大法

- 국무원은 1992년 12월 8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개정안(초안)」 및 「중화인민공화국농업기술유지확대법(초안)」을 심의하였다. 필요한 수정작업을 거쳐 이들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에 상정되어 심의에 부칠 것이다. 특히 상표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위조상표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9년이상 시행되어 온 상표법중 일부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상표법의 보완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현재 시행중인 상표법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일부 위조상표사건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한 측이 고액의 소송비를 지불하였으나 그 배상금은 그보다 적어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를 실효적인 것으로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당한 측이 소송제기를 원치 않아 위조상표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두번째, 상표법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위조상표의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상표법 개정취지라고 할 수 있다(1992년 12월 25일 人民日報).

○ 测量法 (1992년 12월 28일)

- 「중화인민공화국측량법」이 1992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동법은 측량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외에도 중국이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의 필수불가결한 측량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同法은 중국의 측량에 관한 관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주무기관으로서 국무원 측량행정주관기관,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측량업무기관, 군대 측량관리기관으로 3원화하고 있다. 또한 측량기준과 그 시행 및 무자격자에 의한 측량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 · 보건〉

○ 「藥品行政保護條例」(1992년 12월 19일)

- 국가의약관리국이 제정한 이 조례는 대외경제기술합작과 교류를 확대하고 對외국약품독점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해 행정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조례는 총칙, 행정 보호의 신청, 행정보호의 심사와 승인, 행정보호의 기한 · 종료 · 취소 · 효력 및 부칙 등 5章 24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과 약품의 행정적 보호에 관한 양자협약 또는 다자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 또는 개인은 모두 이 조례에 의거하여 약품의 행정적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약품은 반드시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첫째 1993년 1월 1일 전에는 중국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독점권이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 둘째 타인이 신청인의 소재지국에서 당해 약품을 제조, 사용 또는 매매를 금지하는 독점권을 획득하였을 것, 셋째 행정보호신청일 전에는 중국에서 매매되고 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약품행정보호는 GATT에 복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약품업계와 선진국과의 경제 기술합작에 유리하다(1992년 12월 23일 人民日報, 1993년 1월 30일 法制日報).

〈법원 · 법무〉

○ 重慶市의 外國人土地投機制限을 위한 規定

- 중경시정부는 외국인이 대규모 토지를 투기하거나 국내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지방법규를 제정하였다. 최근 부동산 개발붐이 일어 중경시에는 부동산개발 공사가 158개 설립되었으며, 그 중 독자기업과 중외합자기업이 58사이다.

○ 廣東省珠海經濟特區不動產管理條例 (1992년 11월 28일)

- 1978년 개방이후 10년 동안 廣東省 珠海經濟特區의 부동산거래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현재 98개의 부동산개발회사가 활동하고 있고, 1991년도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1736건, 건축면적은

45만 5천여 평방미터였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 건수는 938건, 대출금은 7.4억원이상이었다. 이러한 활발한 부동산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1992년 12월 6일 人民日報).

○ 航空機拉致犯의 處罰에 관한 決定 (1992년12월 28일)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항공기납치범의 처벌에 관한 결정」이 1992년12월 28일 제7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회의에서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결정은 「항공기납치범을 처벌하고 여객기와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 폭력, 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납치한 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 사망케 하거나 항공기가 크게 파괴되도록 하거나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정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대단히 간단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반혁명의 목적으로 비행기를 납치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와 인민에 대한위해가 현저하고 정황이 특별히 사악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을 보충한 것이다. 중국은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처벌사유인 “반혁명적 목적”의 비행기납치 외에도 목적의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비행기납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 결정을 제정한 것이다(1992년 12월 28일 法制日報)

〈판례〉

○ 投資紛爭의 管轄權 決定

- 외자계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섭외분쟁의 발생빈도도 그 만큼 커지

고 있다. 1991년 10월 日照市 물자수출입공사와 대만의 한 회사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였다. 이 중외합자경영기업은 省의 인민정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 영업 허가증까지 발급받았다. 중국측 당사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대량의 사람과 물건을 투입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대만 측 당사자는 극히 일부의 화물과 차량만을 현물출자로서 반입하였을 뿐, 대부분의 출자액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1992년 9월에는 자신이 반입한 화물과 차량을 다른 곳으로 몰래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특 당사자는 日照市 중급인민법원에 대만측 당사자가 빼돌린 화물과 차량에 대한 보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서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다(1993년 2월 4일 法制日報).

○ 合營(合作)企業에서 外資側 出資不履行에 대한 중국측의 處理方法

- 중국지방의 某 鎮(이하 “甲側”이라 한다)와 외국기업(이하 “乙側”이라 한다)은 의복제조업의 중외합자경영기업(A합영기업)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甲側이 건물, 토지사용권 및 유동자금 200만원(인민폐)를 출자하고 乙側은 20만달러에 해당하는 의복제작설비(인민폐로 환산하면 130원)와 유동자금으로 사용될 2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합영기간은 10년으로 하고 甲乙 쌍방은 출자를 2단계에 걸쳐 이행하기로 하였는바, 3개 월의 기본건설시공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前3개월 동안에는 甲側이 토지사용권을 매입, 건물을 개증축하여 토지사용권과 건물로 출자하고 乙側은 의복제작설비(20만달러)를 합영기업에 출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본건설 시공기가 끝난) 제4월의 제1주내에 쌍방은 약정한 유동자금을 A합영기업에 출자하기로 하였다. A합영기업설립계약은 市의 대외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市의 工商行政管理

局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甲側은 토지사용권 매입을 위하여 100만원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나 乙側은 10만달러 가치의 中古衣服製造機 2臺를 반입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출자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외지에서 다른 경제단위와 새로운 합영기업(B)을 설립하였다. A합영기업의 기본건설시공이 끝나기 직전에 甲側은 乙側에 약정한 설비와 금전을 지체없이 출자할 것을催告하였으나 운송수단이 없다, 통관하지 못하였다, 은행자금조달이 어렵다 등 구차한 이유로 이를 지연시키고 甲側에게 甲側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금을 우선 투입하여 공장을 가동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A합영기업은 설비의 불완전성 그리고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側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3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번째 의견은 乙側에 가능한 한 신속히 출자하여 합자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乙側의 이윤분배비율을 높이거나 乙側의 위험부담과 손해부담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乙側에게 종전보다 높은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투자의욕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견은 그 乙側과 합영을 포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의견은 외자측이 출자기한을 넘긴 것은 위약에 해당하므로 A합영기업을 법에 따라 해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甲側의 손해는 乙側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管曉峰은 첫번째와 두번째 의견은 상대방의 위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세번째 의견이 타당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외자측에 의한 출자 불이행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各方출자에 관한 약간의 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的各方出資的若干規定)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1) 합영 쌍방은 합영계약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A합영기업설립계약규정은 기간별 출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쌍방의 제1기 출자는 각각 전체 출자액의 15%를 하회할 수 없으며 영업허가증발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합영 쌍방이 제1기 출자를 이행한 후 제2기 또는 제3기에도 각각 출자기한 3개월이내에 출자를 전부 또는 부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은 투자승인기관과 회동하여 쌍방에게 1개월내에 출자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통지하여야 하며,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승인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은 A합영기업의 승인과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계약규정에 따라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타방은 1개월내에 출자를 이행하도록 催告하여야 한다.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출자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약을 합영기업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타방은 그로부터 1개월내에 합영기업의 해산을 투자승인기관에 신청하거나 새로운 합영자가 위약한 측의 합영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여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을 이행한 측이 그러한 승인을 얻기 전에 새로운 합영파트너에게 違約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 경우 승인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승인과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두번째 의견에서 투자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새로운 합영자를 찾아서 투자손실을 만회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약정을 지킨 측은 법규정에 따라 違約側에 출지불이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합영기업은 違約側이 既出資한 資產을 유치하고 違約側의 出資分에 대하여 청산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既出資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에 대하여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영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약정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분쟁발생후에도 중재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약측이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지적은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의 일방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본적인 처리방법이다. 여기에서 위약측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자

본을 투입하고 합자(합작)경영기업의 목표를 공동으로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제1차적이다.

이상의 사건에서 외국투자가가 약정에 따라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의 甲側은 먼저 乙側에 出資의 이행을 催告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투자승인기관에 법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합영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筆者인 管曉峰은 “甲側은 乙側이 그 기간동안 A합영기업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이익을 얻거나 A합영기업을 자신을 위한 사실상의 담보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외자측이 부득이한 출자불이행시 중국측 당사자에게 상기와 같이 합영기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시사하여주는 것이다 (管曉峰, 外商出資違約 中方投資者應怎麼, 1992년 12월 3일, 法制日報).

○ 中華人民共和國身分證明管理條例의 適用事例

- 최근 중국의 농촌에서는 10원 내지 40원으로 타인의 주민신분증을 빌리거나 매입하는 자들이 있다. 심천시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에는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 1장당 신주매입신청권 1장을 살 수 있으며 1인은 최고 10장의 주민신분증을 소지하여 신청권을 살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주민신분증을 대량으로 빌리거나 사들여 주식을 산 후 심천에서 50원에서 100원까지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치워 폭리를 노리는 자들에 의하여 주민신분증의 차용 또는 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타지에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타지사정에도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을 몰라 자신의 신분증을 팔아버리거나 빌려주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명관리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河南省의 관리가 밝히고 있다(92년 12월 1일 法制日報).

외국법제동향분석 93-1

유럽공동체의 방송규제

1993年 4月 15日 印刷

1993年 4月 19日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 國 法 制 研 究 院
印刷處 (株) 한 국 콤 퓨 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원 2,000원

